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484호 2019. 12. 30(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45호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0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1호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6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3호	도시관리계획(불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9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3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5호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	14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6호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	14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11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14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	15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15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21호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	158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

고시 제 2019 - 245 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이○○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소하천명		금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84-62		
	면적	13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m ²
	기간	2020. 1. 1. ~ 2022. 12. 31.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250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577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5-1번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원당동 · 당하동 일원	948,480.9	-	948,480.9	인고 제1999-18호 (1999. 02. 23)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8,480.9	-	948,480.9	100.0	
주거지역	859,759.8	-	859,759.8	9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6,607.6	-	286,607.6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9,904.7	-	189,904.7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83,247.5	-	383,247.5	40.0	
일반상업지역	88,721.1	-	88,721.1	10.0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가) 교통시설 (변경있음)

①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3	23	40	주간선 도로	1,030 (총 9,095)	동측 지구계	광로 3-25	일반 도로		'98. 6.12.	
소계	3	1개노선		-	1,030	-	-	-			
중로	1	116	20	집산도로	228 (총 1,366)	광로 3-24	중로 1-120	일반 도로		'98. 6.12.	
중로	1	120	20	보조간선 도로	1,330 (총 4,290)	대로 2-61	대로 3-58	일반 도로		'98. 6.12.	버스 베이 설치
중로	1	127	20	집산도로	488	광로 3-23	중로 1-120	일반 도로		'99. 6.23.	
중로	1	128	20	집산도로	499	광로 3-23	중로 1-120	일반 도로		'99. 6.23.	
소계	1	4개노선		-	2,545	-	-	-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73	17	집산도로	462	중로 1-120	중로 1-127	일반 도로		99. 6.23.	
중로	2	174	17	집산도로	545	중로 1-120	중로 1-128	일반 도로		99. 6.23.	
소계	2	2개노선		-	1,007	-	-	-			
중로	3	107	12	집산도로	779	광로3-23	중로1-120	일반 도로		99. 6.23.	
중로	3	108	12	집산도로	322	중로 3-107	소로 3-38	일반 도로		99. 6.23.	
중로	3	111	12	집산도로	483	광로 3-23	중로2-174	일반 도로		99. 6.23.	
중로	3	112	12	집산도로	191	중로 1-120	소로 2-41	일반 도로		99. 6.23.	
소계	3	4개노선		-	1,775	-	-	-			
소로	1	1	10	국지도로	604	중로 1-116	중로 1-120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2	10	국지도로	421	중로 1-127	중로 1-12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3	10	국지도로	313	광로 3-23	중로 1-12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4	10	국지도로	357	중로 3-107	중로 3-108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3	소로 1-4	소로 1-6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6	중로 3-107	소로 1-4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7	10	국지도로	105	중로 1-120	중로 3-107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2	중로 3-108	소로 1-6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9	10	국지도로	89	소로 1-8	소로 1-4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13	중로 3-108	소로 1-4	일반 도로		01. 8.30.	
소로	1	11	10	국지도로	417	중로 1-128	중로 1-12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12	10	국지도로	55	중로 1-128	소로 1-1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1	12개노선			2,865	-	-				
소로	2	1	8	국지도로	158	중로 1-120	소로 1-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	8	국지도로	353	소로 1-1	소로 2-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	8	국지도로	27	중로1-120	소로3-4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	8	국지도로	58	소로 1-1	- (원당동 656-21)	일반 도로		99. 6.23.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5	8	국지도로	37	소로 2-1	소로 3-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6	8	국지도로	49	소로 2-1	소로 3-9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7	8	국지도로	225	중로 2-173	- (원당동 790)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8	8	국지도로	93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9	8	국지도로	92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0	8	국지도로	93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1	8	국지도로	102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2	8	국지도로	100	소로 2-11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3	8	국지도로	289	소로 1-4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4	8	국지도로	74	소로 2-13	소로 1-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5	8	국지도로	41	소로 1-3	소로2-1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6	8	국지도로	120	소로 2-17	소로 2-1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7	8	국지도로	315	소로 1-3	소로2-1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8	8	국지도로	609	소로 2-18	소로 2-1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19	8	국지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1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0	8	국지도로	35	중로 3-107	소로 2-1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1	8	국지도로	14	중로 3-107	동측 지구계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2	8	국지도로	190	중로 3-107	소로 1-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3	8	국지도로	56	중로 3-107	소로 2-2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4	8	국지도로	49	소로 2-22	소로 3-3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5	8	국지도로	118	소로 1-4	소로 1-6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26	8	국지도로	82	소로 1-8	소로 1-4	일반 도로		01. 8.30.	
소로	2	27	8	국지도로	328	소로 1-8	소로 2-27	일반 도로		01. 8.30.	
소로	2	28	8	국지도로	55	소로 2-27	소로 2-27	일반 도로		01. 8.30.	
소로	2	29	8	국지도로	37	중로 3-107	소로 2-27	일반 도로		01. 8.30.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30	8	국지도로	8	중로 3-107	- (원당동 778-1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1	8	국지도로	24	중로 3-107	- (원당동 77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2	8	국지도로	9	중로 3-107	- (원당동 56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3	8	국지도로	216	중로 3-107	소로 2-33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4	8	국지도로	41	중로 3-111	소로 2-35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5	8	국지도로	331	중로 3-111	소로 2-35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6	8	국지도로	368	중로 3-111	중로 3-11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7	8	국지도로	85	소로 2-38	소로 2-36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8	8	국지도로	103	소로 2-36	소로 2-36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39	8	국지도로	179	광로 3-23	소로 2-40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0	8	국지도로	134	중로 1-120	소로 2-39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1	8	국지도로	291	소로 2-47	- (당하동 984-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2	8	국지도로	195	중로 3-112	소로 2-4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3	8	국지도로	26	소로 2-42	남측 지구계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4	8	국지도로	90	소로 2-45	소로 2-4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5	8	국지도로	204	소로 2-41	- (당하동 325)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6	8	국지도로	161	소로 2-41	소로 2-47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7	8	국지도로	174	소로 2-45	소로 2-48	일반 도로		99. 6.23.	
소로	2	48	8	국지도로	463	소로 2-41	소로 2-47	일반 도로		99. 6.23.	
소계	2	48개노선		-	6,924	-	-	-			
소로	3	1	6	국지도로	147	소로 2-1	소로 2-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2	6	국지도로	37	소로 1-1	소로 3-1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3	6	국지도로	99	소로 2-2	소로 3-4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4	6	국지도로	268	소로 2-2	소로 2-2	일반 도로		99. 6.23.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5	4	국지도로	72	소로 2-2	소로 3-4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6	6	국지도로	46	소로 1-1	소로 2-2	일반 도로		99. 6.23.	
소로	3	7	3	특수도로	13	중로 1-116	소로 2-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8	3	특수도로	11	중로 1-116	소로 2-5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9	3	특수도로	16	중로 1-116	소로 2-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0	3	특수도로	368	소로 1-1	소로 2-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1	3	특수도로	15	소로 1-1	소로 3-10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2	3	특수도로	18	중로 1-1	소로 3-10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3	3	특수도로	29	중로 1-120	소로 3-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4	3	특수도로	40	중로 1-120	소로 3-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5	3	특수도로	153	소로 1-1	소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6	3	특수도로	216	소로 1-1	중로 2-17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7	3	특수도로	303	소로 2-7	소로 3-1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8	3	특수도로	36	소로 2-13	소로2-1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19	3	특수도로	30	광로 3-23	소로 2-1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0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소로 2-17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1	3	특수도로	7	광로 3-23	소로 2-17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2	3	특수도로	155	중로 1-127	중로 2-17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3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4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5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6	2	특수도로	295	소로 2-21	북측 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7	3	특수도로	40	소로 2-18	소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8	3	특수도로	36	소로 3-27	소로 3-2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29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30	3	특수도로	20	중로 1-120	소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31	3	특수도로	20	중로 1-120	소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32	3	특수도로	16	중로 3-107	소로 2-2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33	3	특수도로	26	중로 3-107	소로 1-5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4	3	특수도로	33	소로 1-5	소로 2-25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5	3	특수도로	26	중로 3-107	소로 1-8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6	3	특수도로	43	중로 3-107	소로 2-27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7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27	보행자 전용도로		'01. 8.30.	
소로	3	38	3	특수도로	580	중로 3-107	중로 3-108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39	6	특수도로	30	중로 3-107	- (원당동 56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0	6	특수도로	15	중로 1-120	- (원당동 568-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1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원당동 565)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2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원당동 56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3	3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2-33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4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소로 2-35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5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당하동 13-2)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6	4	특수도로	201	중로 1-128	중로 3-1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7	3	특수도로	229	소로 2-35	소로 2-36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8	3	특수도로	18	소로 2-36	소로 3-47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49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0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1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2	4	특수도로	229	중로 1-128	중로 2-174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3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39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소로	3	54	3	특수도로	170	소로 2-40	소로 2-41	보행자 전용도로		'99. 6.23.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55	3	특수도로	57	중로 3-112	소로 2-42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소로	3	56	3	특수도로	33	소로 2-48	소로 2-46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소로	3	57	3	특수도로	34	소로 2-48	소로 2-47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소로	3	58	4	특수도로	55	중로 1-127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99.6.23.	
소계	3	58개노선		-	4,637	-	-	-			

주) ()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

②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5,638.1	감)1,409.5	4,229.2	-	
폐지	1	주차장	원당동 825-1	1,409.5	감)1,409.5	-	99.06.23.	
기정	2	주차장	원당동 825-8	1,409.1	-	1,409.1	99.06.23.	
기정	3	주차장	당하동 1029-1	1,411.3	-	1,411.3	99.06.23.	
기정	4	주차장	당하동 1030-6	1,408.2	-	1,408.2	99.06.2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주차장	•주차장1 폐지 - 면적 : 1,409.5㎡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주차장 폐지 ※ 주차장2에 폐지된 주차면 확보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①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44,932.5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11-2	18,321.3	99.6.23.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24-11	10,226.9	99.6.23.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49	11,114.7	01.8.30.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원당동 805-3	2,949.5	99.6.23.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041	2,320.1	00.6.26.	

②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	----------	-----	---------	-----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13,933.1	-	
소계	-	-	-	-	9,162.4	-	완충녹지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11-9	388.2	ˆ 99.6.23.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2	418.0	ˆ 99.6.23.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3	1,147.2	ˆ 99.6.23.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4	106.0	ˆ 99.6.23.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19-1	913.6	ˆ 99.6.23.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27-1	928.5	ˆ 99.6.23.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27-2	838.9	ˆ 99.6.23.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11	374.8	ˆ 99.6.23.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10	801.1	ˆ 99.6.23.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9	942.4	ˆ 99.6.23.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5-3	170.3	ˆ 99.6.23.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원당동 858	539.0	ˆ 99.6.23.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33-6	675.4	ˆ 99.6.23.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당하동 1035	919.0	ˆ 99.6.23.	
소계	-	-	-	-	4,770.7	-	경관녹지
기정	15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795-1	114.7	ˆ 99.6.23.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01	1,196.9	ˆ 99.6.23.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40-6	986.6	ˆ 99.6.23.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4-13	298.1	ˆ 99.6.23.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4-6	107.7	ˆ 99.6.23.	
기정	20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6-2	207.1	ˆ 00.6.26.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87-2	479.7	ˆ 10.10.4.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87-1	98.2	ˆ 10.10.4.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3-5	523.0	ˆ 10.10.4.	
기정	24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7-1	111.3	ˆ 10.10.4.	
기정	25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7-5	59.2	ˆ 10.10.4.	
기정	26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7-6	143.0	ˆ 10.10.4.	
기정	27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61-1	142.0	ˆ 10.10.4.	
기정	28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10-14	303.2	ˆ 10.10.4.	

③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1,436.9	-	
기정	1	공공공지	원당동 873	884.7	ˆ 10.10.4.	
기정	2	공공공지	원당동 836-4	379.1	ˆ 10.10.4.	
기정	3	공공공지	원당동 849-1	119.8	ˆ 10.10.4.	
기정	4	공공공지	원당동 857-2	53.3	ˆ 10.10.4.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있음)

①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세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57,715.8	-	
기정	1	학 교	고등학교	원당동 852-3	12,053.0	99.6.23.	
기정	2	학 교	중학교	원당동 852-2	11,419.5	99.6.23.	
기정	3	학 교	초등학교	원당동 809	12,215.1	99.6.23.	
기정	4	학 교	초등학교	당하동 1022	11,247.3	99.6.23.	
기정	5	학 교	초등학교	당하동 1038-1	10,780.9	00.6.26.	

②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5,368.6	-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원당동 853-1	1,990.1	99.6.23.	
기정	2	공공청사	우체국	원당동 823-2	1,264.9	99.6.23.	
기정	3	공공청사	파출소	원당동 854-1	970.3	99.6.23.	
기정	4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원당동 854-2	1,143.3	99.6.23.	

③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복합 체육관	원당동 825-1	-	증)1,409.5	1,409.5	-	

■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체육시설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1,409.5㎡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 신설

라) 방재시설 (변경없음)

①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세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하천	하천	원당동 851-4	5,150.3	99.6.23.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단독주택용지(A-1 용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1-1	615.7	1	387.5	
			2	228.2	
	2	893.4	1	316.4	
			2-1	270.2	
			2-2	306.8	
	3	2,215.2	1	369.2	
			1-2	369.2	
			1-3	369.2	
			1-4	369.2	
			1-5	369.2	
			1-6	369.2	
	4	2,079.9	1-1	440	-
			1-2	465.4	-
			2-1	273.0	-
			2-2	315.0	-
			2-3	586.5	-
	9	5,198.9	1	485.9	-
			2	1,262.8	-
			3-1	298.1	-
			3-2	299.5	-
			3-3	298.2	-
			3-4	299.7	-
			4-1	293.0	-
			4-2	275.0	-
			4-3	337.0	-
			4-4	319.0	-
			4-5	276.1	-
			4-6	275.0	-
			5	479.6	-
	10	4,312.3	1-1	922.8	-
			1-2	664.0	-
			2-1	340.5	-
2-2			340.5	-	
3			381.4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4-1	275.7	-
			4-2	310.9	-
			5	677.0	-
			6	399.5	-
	11	2,521.8	1	1,629.3	-
			2	447.8	-
			3	444.7	-
	14	2,138.9	1	605.3	-
			2	306.1	-
			3	347.3	-
			4	291.5	-
			5	182.1	-
			6	406.6	-
	15	3,058.0	1	595.9	-
			2	1,196.9	-
			3	432.3	-
			4-1	277.5	-
			4-2	277.6	-
			4-3	277.8	-
	21	5,282.4	1	389.3	-
			2	389.6	-
			3-1	349.8	-
			3-2	656.6	-
			3-3	570.0	-
			4	612.5	-
			5	566.1	-
			6	335.5	-
			7-1	352.5	-
			7-2	330.8	-
			7-3	330.6	-
22	2,138.6	8	399.1	-	
		1	369.4	-	
		2	470.1	-	
		3	692.8	-	
		4	288.3	-	
23-1	1,271.7	5	318.0	-	
		1	674.6	-	
23-2	1,287.4	2	597.1	-	
		4-1	415.0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4-2	397.8	
			4-3	474.6	
	27	5,560.6	1	603.6	-
			2	412.4	-
			3-1	387.8	-
			3-2	379.7	-
			3-3	379.7	-
			3-4-1	324.8	-
			3-4-2	324.7	-
			3-4-3	324.7	-
			3-4-4	334.0	-
			3-4-5	334.0	-
			3-4-6	334.1	-
			4	198.1	-
			5	549.4	-
			6-1	231.2	-
			6-2	442.4	-
	54-1	1,483.3	1-1	317.6	-
			1-2	741.6	-
			1-3	424.1	-
	54-2	1,258.5	3-1	282.0	
			3-2	231.5	
			3-3	231.4	
			3-4	231.5	
			3-5	282.1	
	55	2,327.8	1	579.2	-
			1-2-1	525.4	-
			1-2-2	305.8	-
			1-2-3	305.8	-
			1-2-4	305.8	-
			1-2-5	305.8	-
56	1,854.3	1	303.8		
		2-1	311.6		
		2-2	311.6		
		3-1	308.3		
		3-2	308.9		
		3-3	310.1		
57	1,276.3	1	811.5	-	
		2	464.8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58-1	769.9	1	769.9	-
	59	3,508.0	1-1	291.8	
			1-2	291.8	
			2-1	253.3	
			2-2	258.4	
			2-3	297.5	
			2-4	301.6	
			2-5	304.7	
			2-6	300.5	
			2-7	304.6	
			2-8	304.7	
			2-9	301.6	
	2-10	297.5			
	60	3,314.7	1-1-1	247.7	-
			1-1-2	247.7	-
			1-2	495.4	-
			2-1-1	267.1	-
			2-1-2	304.3	-
			2-1-3	300.3	-
			2-1-4	290.2	-
			2-2	389.2	-
			2-2-1	385.3	-
	2-3	387.5	-		
	61	3,426.0	1-1-1	282.0	-
			1-1-2	291.0	-
			1-1-3	287.0	-
			1-1-4	296.0	-
			1-2-1	332.0	-
			1-2-2	321.0	-
			1-2-3	316.0	-
			1-2-4	316.0	-
			1-2-5	320.0	-
			1-2-6	337.0	-
			1-2-7	328.0	-
	62	2,099.8	1-1	561.5	-
			1-2-1	294.5	-
			1-2-2	273.8	-
			2-1-2	299.9	-
			2-2	359.9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64	2,860.9	2-3	310.2	-		
			1	2,504.1	-		
			2	356.8	-		
	65-1	815.0	1	815.0	-		
	66	5,102.2	1-1	370.0	-		
			1-2	422.2	-		
			1-3	420.6	-		
			1-4	358.9	-		
			1-5	356.5	-		
			1-6	354.2	-		
			1-7	356.2	-		
			1-8	385.7	-		
			2-1-1	351.7	-		
			2-1-2	344.5	-		
			2-1-3	346.5	-		
			2-1-4	344.2	-		
			2-1-5	344.2	-		
			2-2	346.8	-		
			67	4,750.9	1-1	317.7	
					1-2	317.8	
	1-3	317.8					
	1-4	317.8					
	1-5	317.7					
	1-6	317.8					
	1-7	317.8					
	1-8	317.4					
	2-1	330.6					
	2-2	309.6					
	2-3	309.6					
	2-4	309.5					
	2-5	309.6					
	2-6	309.6					
	2-7	330.6					
	79-2	1,589.6	2-1	359.4	-		
			2-2	509.4	-		
			3	338.7	-		
			4	382.1	-		
	81-1	1,907.0	1-1	467.7	-		
			1-2	347.2	-		
			2-1	298.1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2-2	298.1	-
			2-3	495.9	-
	82	1,500.0	1-1	305.6	
			1-2	274.7	
			1-3	338.0	
			1-4	289.9	
			1-5	291.8	
	83	1,082.4	1-1	541.2	-
			1-2	541.2	-
	86	3,574.6	1	802.4	-
			2-1	371.3	-
			2-2	296.5	-
			2-3-1	334.1	-
			2-3-2	334.9	-
			3-1	356.0	-
			3-2	356.8	-
			3-3	362.4	-
	89	1,749.3	1-1	295.4	
			1-2	290.6	
			1-3	290.6	
			1-4	290.7	
			1-5	290.6	
			1-6	291.4	
	90	2,630.4	1	2,630.4	-
	91	4,070.9	1-1	334.6	
			1-2	334.0	
			1-3	332.5	
1-4			331.1		
1-5			329.6		
1-6			367.6		
1-7			387.2		
1-8			328.0		
1-9			328.0		
1-10			328.0		
1-11			328.0		
1-12			342.3		
92	4,263.4	1-1	243.3		
		1-2	312.9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1-3	312.9	
			1-4	312.9	
			1-5	313.1	
			1-6	313.1	
			1-7	313.1	
			1-8	268.0	
			1-9	290.2	
			1-10	340.1	
			1-11	294.1	
			1-12	313.9	
			1-13	314.9	
			1-14	320.9	

② 단독주택용지(A-2 용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2	5	2,348.8	1	219.5	
			2-1	663.8	
			2-2	562.4	
			3	639.7	
			4	263.4	
	24	2,744.7	1-1	169.9	
			1-2	396.7	
			1-3	383.3	
			2	832.9	-
			3-1	455.4	
			3-2	506.5	-
	63	3,526.9	1-1	1,182.7	-
			2-1	431.6	
			2-2	416.6	
			2-3	338.3	
			3-1	374.3	
			3-2	231.4	
			4-1	261.0	
			4-2	291.0	
	68-1	1,748.2	1	385.9	
			2	423.0	
			3-2	335.7	
			4-1	301.9	
			4-2	301.7	
	77-1	4,438.9	1	292.0	
			2	3,065.8	-
			3-1	401.5	
			3-2	385.6	
			3-2-1	294.0	
	80-2	643.6	10	643.6	-
85-1	881.5	2-1	292.5		
		2-2	309.0		
		2-3	280.0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2	87	2,658.8	1-1	346.7	
			1-2	330.5	
			1-3	330.6	
			1-4	346.8	
			2	309.7	
			3	296.3	
			4-1	368.2	
			4-2	330.0	
	103-1	1,794.7	1	660.0	
			2-1	284.5	
			2-2	284.5	
			2-3	284.5	
			2-4	281.2	
	104	1,456.0	1	663.3	-
			2	792.7	-
	105	2,018.6	1	344.9	
			2	302.3	
			3	540.1	-
			4	831.3	-
	107-1	664.8	1	664.8	
	108-2	1,113.7	1	280.4	
			2	833.3	-

③ 단독주택용지(A-3 용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7	3,332.3	1-1	347.0	
			1-2	346.9	
			1-3	330.4	
			1-4	330.3	
			2-1	362.2	
			2-2	346.5	
			2-3	258.6	
			3-1	350.6	
			3-2	659.8	-
	8-1	3,063.0	1	905.3	-
			2-1	328.3	-
			2-2	332.4	-
			3	521.8	
			4	203.0	
			5	772.2	-
	12	2,888.3	1	660.4	-
			2	638.7	-
			3	467.8	
			4-1	330.7	
			4-2	330.7	
			4-3	460.0	
	13	1,296.3	1	158.8	
			2	227.2	
			3	910.3	-
	16	3,824.4	1-1	283.3	-
			1-2	256.5	-
			1-3	256.1	-
			2-1	296.5	-
			2-2	296.4	-
			3	314.1	
			4-1	367.4	-
			4-2	367.3	-
			5-1-1	277.3	-
			5-1-2	277.3	-
			5-1-3	277.5	-
			5-2	277.4	
5-3			277.3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17-1	5,298.3	1	1,108.5	-	
			2	239.9		
			3-1	304.2		
			3-2	330.6		
			3-3-1	331.7	-	
			3-3-2	331.6	-	
			4-1	275.5	-	
			4-2	866.5	-	
			5	715.8	-	
			6	794.0	-	
	30	1,519.7	1	589.6	-	
			2-1	304.5		
			2-2	625.6	-	
	31	1,116.4	1-1	279.0		
			1-2	279.1		
			1-3	279.1		
			1-4	279.2		
	32	3,141.7	1-1	257.7		
			1-2	257.8		
			1-3	280.0		
			1-4	661.0	-	
			1-5	262.0		
			2-1	845.9	-	
	33	1,949.7	2-2	577.3	-	
			1	1,551.1	-	
			2	231.9		
	34	2,243.5	3	166.7		
			1-1	330.5		
			1-2	330.5		
			1-3	330.5		
			1-4	307.0		
			2-1	688.1		
	35-1	1,104.3	2-2	256.9		
			1-1	422.3	-	
			1-2	276.8	-	
	36-1	1,366.5	2	405.2		
			1-1	244.2	-	
			1-2	244.2	-	
			1-3	284.3	-	
			1-4	330.0	-	
				2	263.8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37-1	1,486.2	1	336.4	
			2-1	332.6	-
			2-2	314.3	-
			3	502.9	-
	38	2,020.7	1-1	336.5	
			1-2	336.4	
			1-3	495.3	-
			2-1	284.1	-
			2-2	284.2	-
			2-3	284.2	-
	39	2,210.2	1	193.4	
			2	429.0	
			3	176.8	
			4-1	329.3	-
			4-2	329.3	-
			5-1	376.2	
			5-2	376.2	
	40	3,274.6	1	2,228.7	-
			2-1	550.0	-
			2-2	495.9	-
	42	4,256.5	1	705.4	-
			2	878.4	-
			3	1,017.0	-
			4	779.2	-
			5-1	397.0	
			5-2	285.8	
			6	193.7	
	43	1,626.9	1-1	267.1	
			1-2	234.6	
			1-3	273.9	
			1-4	572.0	-
			1-5	279.3	
	44	2,134.3	1-1	337.1	-
1-2			337.0		
2-1			431.8		
2-2			297.6		
2-3-1			350.0	-	
2-3-2			380.8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3	47-1	1,658.7	1-1	256.7	
			1-2	256.4	
			1-3	256.3	
			1-4	256.3	
			2	633.0	-
	49	2,890.8	1-1	567.0	-
			1-2	603.6	-
			1-3	200.0	
			2	377.4	
			3-1	942.0	-
			3-2	200.8	
	50	3,162.7	1	438.1	-
			2	211.1	
			3	368.5	
			4-1	266.5	-
			4-2	266.5	-
			5	386.6	
			6-1	330.6	-
			6-2	302.8	-
			7	353.4	
			8	238.6	
	52	2,769.0	1	1,907.7	-
			2	861.3	-

④ 단독주택용지(A-4 용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4	6	2,107.7	1	406.8	
			2	953.9	-
			3	747.0	-
	25	1,810.2	1	572.5	-
			2	572.5	-
			3	665.2	-
	29	2,625.8	1-1-1	531.3	
			1-1-2	531.3	
			1-2-1	531.2	-
			1-2-2	531.1	-
			2	500.9	
	45	1,830.2	1-1-1-1	279.8	
			1-1-1-2	296.9	
			1-1-1-3	306.0	
			1-1-2	572.3	-
			1-2	375.2	
	46-1	2,448.1	1	248.8	
			2	514.5	-
			3-1	247.4	
			3-2	297.5	
			3-3	200.0	
			4-1	470.0	
			4-2	469.9	
	48-1	987.5	1	987.5	-
	51	3,428.4	1-1	519.4	-
			1-2	519.5	-
			2	764.7	-
			3-1-1	220.4	
3-1-3			213.0		
3-2			326.5		
3-3			546.9		
3-4			318.0		

⑤ 다세대/연립주택용지(B-1 용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1	19	2,499.4	1-1	701.1	
			1-2	718.6	
			1-3	705.7	
			2	374.0	
	20	2,986.3	1-1	807.2	
			1-2	851.9	
			2	1,327.2	
	26	1,919.8	1-1	735.3	
			1-2	703.6	
			2	129.5	
			3	351.4	
	109-2	1,646.9	2-1	338.5	
			2-2	338.7	
			2-3	338.7	
			2-4	366.8	
			3	264.2	
	110	3,682.2	1-1-1	758.0	
			1-1-2	785.5	
			1-2	561.2	
			2-1	350.1	
			2-2	361.3	
			2-3	432.2	
			2-4	433.9	
	111	3,319.4	1	296.9	
			2	272.4	
			3	1,023.6	
			4-1	379.2	
			4-2	349.7	
4-3			360.7		
5-1			318.5		
5-2			318.4		
112	1,540.9	1-1	394.5		
		1-2	376.1		
		1-3	376.2		
		1-4	394.1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1	114	3,186.1	1	729.6	
			2	688.9	
			3	537.2	
			4	432.7	
			5	797.7	-
	115	2,398.4	1-1-1	406.9	
			1-1-2	515.9	
			2-1	595.3	
			2-2	880.3	
	116	4,696.2	1-1	371.2	
			1-2	382.1	
			1-3	342.8	
			1-4	361.2	
			2-1	479.2	-
			2-2	479.1	-
			3	395.5	
			4-1	337.7	
			4-2	405.5	
			5-1	383.1	
			5-2	374.7	
			5-3	384.1	
			117	3,483.0	1
	2	711.9			-
	3	630.8			-
	4-1	345.6			
	4-2	333.4			
	4-3	346.8			
	4-4	333.9			
	118	3,836.8	1-1	393.0	
			1-2	392.9	
			1-3	392.9	
			2-1	660.6	
			2-2	653.5	
3-1-1			330.3		
3-1-2			332.0		
3-2-1			341.1		
3-2-2			340.5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1	119	3,328.3	1	1,769.4	-
			2-1	768.0	
			2-2-1	386.7	
			2-2-2	404.2	
	120	3,038.5	1-1	437.2	
			1-2	732.8	-
			2	630.9	
			3	876.3	
			4	361.3	
	121	2,571.4	1-1	419.2	
			1-2	412.0	
			1-3	640.9	
			1-4	548.1	-
			2-1	287.4	
			2-2	263.8	
	122	1,351.9	1	308.6	
2			375.1		
3			506.2	-	
4			162.0		

⑥ 연립주택용지(C-1 용도)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C-1	53-2	14,717.3	10	8,423.2	
			11	6,294.1	

⑦ 아파트용지(D-1 용도)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D-1	53-1	33,749.1	1	520.6	
			2	570.9	
			3	200.2	
			4-1	4,009.6	
			4-2	5,540.6	
			5	3,347.5	
			6	2,725.2	
			7	778.4	
			8	1,157.9	
	9	14,898.2			
	69-1	20,697.3	1	5,891.5	
			2	14,805.8	
	70	28,370.9	1	28,370.9	
	93-1	48.9	3	18,386.6	
			8	562.3	
	94	39,757.4	1	30,135.1	
			2	9,622.3	
	101	43,298.5	1	43,298.5	
102	35,665.9	1	35,665.9		

⑧ 아파트용지(D-2 용도)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D-2	78-1	21,077.2	1	21,077.2	
	80-1	13,267.1	3	13,267.1	
	108-1	18,427.1	3	18,427.1	

⑨ 아파트용지(D-2 용도)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D-2	46-2	320.0	6	320.0	

⑩ 상업용지(E-1 용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E-1	72-1	4,692.8	2	418.9	
			3	582.0	
			4	1,345.7	-
			5-1	605.6	
			5-2	605.5	
			5-3	605.5	
			6	529.6	
	74-1	4,599.4	1	385.8	
			2	972.1	
			3	941.9	
			6	504.1	
			7	787.1	
			8	1,008.4	-
	97-1	6,922.7	2	412.9	
			3	412.8	
			4	443.7	
			5-1	728.6	
			5-2	1,463.4	-
			6	761.4	
			7	818.0	
			8	1,315.0	
			10	566.9	
			99-1	6,254.5	1
	2	460.5			
	3-1	771.5			
	4-1	622.7			
	4-2	612.7			
	7	938.6			-
	8	1,635.1			-
	9	554.0			

⑪ 상업용지(E-2 용도)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E-2	71	3,547.9	1	1,825.1	-
			2	1,180.9	
			3	541.9	
	73	3,415.8	1	528.0	
			2	1,891.5	
			3	996.3	
	75	3,988.0	1	533.2	
			2-1	1,051.8	
			2-2	1,051.6	
			3	1,351.4	
	95	3,497.9	1	768.3	
			2	805.4	
			3	1,541.3	
			4	382.9	
	96	4,894.0	1	968.1	
			2	526.2	
			3	838.8	
			4	836.2	
			5	850.6	
			6	874.1	
	98	4,510.0	1	554.1	
			2	942.0	
			3	524.2	
			4	864.6	
			5	858.8	
6			766.3		
100	3,445.4	1	938.0		
		2	705.4		
		3	400.6		
		4	651.5		
		5	749.9		

⑫ 학교용지(F-1 용도)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F-1	28	12,215.1	1	12,215.1	초 교
	78-2	11,419.5	2	11,419.5	중 교
	78-3	12,053.0	3	12,053.0	고 교
	88	11,247.3	1	11,247.3	초 교
	109-1	10,780.9	1	10,780.9	초 교

⑬ 공공청사용지(G-1 용도)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G-1	69-2	1,264.9	3	1,264.9	우체국
	79-1	1,990.1	1	1,990.1	동사무소
	80-3	970.3	1	970.3	경찰서
	80-4	1,143.3	2	1,143.3	소방서

⑭ 주차장용지(H-1 용도)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H-1	72-2	1,409.5	1	1,409.5		-	-	-	-		
	74-2	1,409.1	5	1,409.1		74-2	1,409.1	5	1,409.1		
	97-2	1,411.3	1	1,411.3		97-2	1,411.3	1	1,411.3		
	99-2	1,408.2	6	1,408.2		99-2	1,408.2	6	1,408.2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주차장1 폐지 -72-2(1) 삭제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주차장 1 폐지

⑮ 체육시설용지(I-1 용도)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	-	-	-	-	-	I-1	72-2	1,409.5	1	1,409.5	

■ 결정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체육시설용지 신설 -72-2(1)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용지 신설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있음)

① 단독주택용지(A-1)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② 단독주택용지(A-2)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105,107-1, 108-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③ 단독주택용지(A-3)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 BL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A-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별표2의 A	
		형 태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한 계 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④ 단독주택용지(A-4)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4	6, 25, 29, 45, 46-1, 48-1, 51 BL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A-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별표2의 A	
		형 태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 축 한 계 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⑤ 공동주택용지(B-1: 다세대/연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B-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B-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별표2의 B	
		형 태	○별표3의 B	
		색 채	○별표4의 B	
		건축한계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⑥ 공동주택용지(C-1: 연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53-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C-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2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별표2의 C	
		형 태	○별표3의 C	
		색 채	○별표4의 C	
건축한계선	○17m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⑦ 공동주택용지(D-1: 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 12~17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⑧ 공동주택용지(D-2: 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78-1, 80-1, 108-1 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 12~17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단, 주된 개구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	

⑨ 공동주택용지(D-3: 아파트-KAL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46-2BL	용도	허용용도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불허용도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한 계 선		

⑩ 상업용지(E-1)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72-1, 74-1, 97-1, 99-1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E-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E-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330%이하	
		높 이	○ 3-5층(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	
		배 치	○ 별표2의 E	
		형 태	○ 별표3의 E	
		색 채	○ 별표4의 E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벽 면 지 정 선	○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1.0m			

⑪ 상업용지(E-2)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2	71, 73, 75, 95, 96, 98, 100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E-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E-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륜	○ 55%이하	
		높 이	○ 5-8층(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	
		배 치	○ 별표2의 E	
		형 태	○ 별표3의 E	
		색 채	○ 별표4의 E	
		건 축 한 계 선	○ 1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5m ○ 40m 도로변: 건축한계선 3.0m	
		벽면지정선	○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1.0m	

⑫ 학교용지(F-1)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1	28, 78-2, 78-3, 88, 109-1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F-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F-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한 계 선	○ 12~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2.0m ○ 소음에 지장이 있고, 주된 개구부가 없을 경우는 3m,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30m			

⑬ 공공청사용지(G-1)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1	69-2, 79-1, 80-3, 80-4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 G-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 G-1의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17~20m 도로변: 1.0m	

⑭ 주차장용지(H-1)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H-1	72-2, 74-2, 97-2, 99-2 BL	74-2, 97-2, 99-2 BL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H-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H-1의 불허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	
			높이	○28m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10~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용지 위치 삭제 - 72-2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주차장1 폐지

⑮ 체육시설용지(I-1) (신설)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72-2	용 도	허용용도	○ 별표1의 I-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I-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50%이하	
		높 이	○ 28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 10~2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0m	

■ 결정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체육시설용지 신설 - 72-2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 신설

- ※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상업용지의 일부 획지에 대해 공동건축을 권장
 -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일부 획지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 별표5의 A-1, A-2, A-3, A-4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BL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BL		
A-4	6, 25, 29, 45, 46-1, 48-1, 51BL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BL	○ 별표5의 B-1, C-1, D-1, D-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C-1	53-2BL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D-2	78-1, 80-1, 108-1BL		
D-3	46-2BL(6LT)	○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E-1	72-1, 74-1, 97-1, 99-1BL	○ 별표5의 E-1, E-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E-2	71, 73, 75, 95, 96, 98, 100BL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차량 및 주차계획 (변경있음)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 별표6의A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BL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BL		
A-4	6, 25, 29, 45, 46-1, 48-1, 51BL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BL	○ 별표6의 B, C, D 차량 및 주차계획(도면참조)	
C-1	53-2BL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D-2	78-1, 80-1, 108-1BL		
D-3	46-2(6LT)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E-1	72-1, 74-1, 97-1, 99-1BL	○ 별표6의 E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E-2	71, 73, 75, 95, 96, 98, 100BL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 별표6의A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BL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BL		
A-4	6, 25, 29, 45, 46-1, 48-1, 51BL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BL	○ 별표6의 B, C, D 차량 및 주차계획(도면참조)	-
C-1	53-2BL		
D-1	53-1, 69-1, 70, 93-1, 94, 101, 102BL		
D-2	78-1, 80-1, 108-1BL		
D-3	46-2(6LT)	○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E-1	72-1, 74-1, 97-1, 99-1BL	○ 별표6의 E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E-2	71, 73, 75, 95, 96, 98, 100BL		
I-1	72-2	○ 별표6의 I-1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결정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I-1의 차량 및 주차계획 신설 - 72-2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차량 및 주차계획 신설 -조서 누락 정정 및 차량동선 조정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도면참조	○ 별표7의 보행자전용도로	-

■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원당지구단위계획구역	○ 별표8의 식재, 가로장치물, 조명, 포장 등	-

■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공원 · 녹지	공원 · 녹지	<p>○ 근린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수림 및 지형을 이용한 휴게, 운동공간 위주로 계획하며 기존지형 및 수림의 훼손을 최소화 - 구릉지형 공원으로서 기존수림은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계획수림 - 지구주민을 위한 놀이, 운동, 휴식, 산책을 위한 공간을 조성 - 경계부에 차폐녹지대를 설치하여 공원의 존재인식 및 아늑한 위요 공간을 형성 <p>○ 어린이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흥미성, 쾌적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인근주민의 시설이용 편리 도모가 가능한 놀이공원 계획 <p>○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녹지율을 각각 85%, 45%이상 확보</p>
	녹지	<p>○ 완충녹지는 방음효과와 경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위적 동산(Mounding)의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양호한 수림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식생을 복층 구조화 유도</p> <p>○ 속성수종을 선정,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p> <p>○ 경관녹지는 개발로 훼손될 기존수목중 이식 가능한 수목을 녹지대에 이식 처리하여 조기녹화 및 주변 식생과의 조화 도모</p>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군부대 협의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 (별표참조)

-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 【별표2】 건축물 배치계획
- 【별표3】 건축물 형태계획
- 【별표4】 건축물 색채계획
- 【별표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별표8】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변경있음)

■ 기정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이하)	용적률(%이하)	높이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10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8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 이하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2 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 이하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2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 이하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15층 이하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불허용도			
E-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p>※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330	3~5층
E-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p>※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550	5~8층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F-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단, 유치원은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00	5층이하
G-1	○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 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H-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 축물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0	1500	28m이하

※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

■ 변경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10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80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종교시설 (타종 및 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 이하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2 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 이하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다세대/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주택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20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 이하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적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15층 이하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불허용도			
E-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p>※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330	3-5층
E-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p>※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550	5-8층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F-1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단, 유치원은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00	5층이하
G-1	○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H-1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0	1500	28m이하
I-1	○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0	350	28m이하

※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

■ 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용지의 용도 결정 -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운동시설 신설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배치
<p>단독 주택 용지</p>	<p>A-1 A-2 A-3 A-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기 위해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단,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적용)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
<p>공동 주택 용지</p>	<p>B-1 C-1 D-1 D-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 광로변은 교통소음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직각 배치를 권장 ○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 17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 1m, 20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 1.5m ○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p>D-3</p>	<p>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p>
<p>상업 용지</p>	<p>E-1 E-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 ○ 1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 20m, 40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각각 1.0m, 1.5m, 3.0m 지정 ○ 보행자도로변 양측에 보행환경 향상을 위해 벽면한계선을 1m (1층에 한함)를 지정
<p>공공 청사</p>	<p>G-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건축한계선: 1m)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3】 건축물 형태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을 설치토록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 7/10 ○ 옥상의 물탱크 설치시 지양하며, 가압급수 방식으로 권장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의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담장 1.2m, 대문 1.8m 이하로 규제 -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외벽 색상은 원색사용 지양)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 ○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시 측면벽을 이용(권장)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 -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 ~ 7/10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1.2m이하 설치 ○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시 측면벽을 이용(권장)→B1용도에 한함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용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 건축물의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전면의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

【별표4】 건축물 색채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색채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단 강조색은 가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드마크(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용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강조색은 가능)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색채는 파랑,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을 위주로 권장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주조색 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 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건축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 12m이상의 도로변(공동주택지내) 대지에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 의해 설치하는 조경시설을 지정한 곳은 공공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로변 소공원(쌈지공원 - Pocket park)으로 조성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쌈지공원을 조경시설로 조성시 45㎡이상 설치 ○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D-3	전면공지 대지내조경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용지	E-1 E-2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40m 도로변 상업지역의 모퉁이변(도면참조)을 공개공지로 확보(규제)하여 이용자의 보행환경 활성화 및 휴게공간, 쉼터 역할을 유도 ○ 공개공지는 최소면적 45㎡이상으로 확보 ○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피로티구조(1층 높이 4m이상),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 40m도로변의 대단위시설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식재로 수림대 조성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 기정

용도	도면 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독 주택 용지	A-1 A-2 A-3 A-4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
공동 주택 용지	B-1 C-1 D-1 D-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의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 B-1용도(다세대/연립)에서의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
	D-3	차량 동선 주차 시설	<p>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p>
상업 용지	E-1 E-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 변경

용도	도면 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독 주택 용지	A-1 A-2 A-3 A-4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 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
공동 주택 용지	B-1 C-1 D-1 D-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 B-1용도(다세대/연립)에서의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
	D-3	차량 동선 주차 시설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 용지	E-1 E-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해 방지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체육 시설 용지	I-1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미만의 도로의 가각부의 경우 각 3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체육시설용지의 차량 및 주차계획 신설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차량 및 주차계획 신설 -조서 누락 정정 및 차량동선 조정 (10m 도로변 가각부 3m구간 외 주차출입 허용)

【별표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표시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A-1, A-2 A-3, A-4 B-1, C-1 D-1, D-2 E-1, E-2	보행자 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 램프 설치를 고려하여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
D-3	보행자 전용도로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별표8】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가 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이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시각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가로 장치물 설계
식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블록 사용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연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 명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결정하여 설치 ○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법,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등)
옥외광고물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에 따름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51호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7호(2015.06.01.) 및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72호(2016.12.26.)로 고시된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재활용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 재활용단지 명칭(변경없음)

-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기존 사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정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 서구 지역 환경 및 경관 개선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면 적 : 56,256㎡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3년 ~ 2020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하는 다음의 업종
- 산업시설용지에 재활용산업에 해당하는 모든 유치업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시 업종간 연관성 고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중분류		비 고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 할 것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8	폐기물 수립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원료재생업에 한함)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 성 명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잡종지, 답, 제방의 지목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잡종지	제 방	기 타	비 고
면 적 (㎡)	56,256	1,826	52,491	1,939	-	
구성비 (%)	100.0	3.3	93.3	3.4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계	56,256	100.0	
산업시설용지	38,097	67.7	
지원시설용지	482	0.9	
공공시설용지	17,677	31.4	
공원·녹지	2,900	5.1	
공 원	473	0.8	
녹 지	2,427	4.3	
유수지	797	1.4	
수질오염방지시설	1,088	2.0	
주차장	445	0.8	
도 로	12,447	22.1	시설도로 : 11,724㎡

※ 상기 도로면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및 사업부지 경계부 존치되는 현황도로를 합산한 면적임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시 설 명	주요내용	면 적(㎡)	비 고
도 로	4개 노선 (823 m)	중로(2개노선) : 720m 소로(2개노선) : 103m	
주 차 장	1개소	445	
공 원	1개소	473	소공원
녹 지	2개소	2,427	완충녹지
유 수 지	1개소	797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	1,088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계획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4	823	11,724	-	-	-	3	753	11,268	1	70	456
중 로	2	720	10,991	-	-	-	2	720	10,991	-	-	-
소 로	2	103	733	-	-	-	1	33	277	1	70	45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4개 노선										
소계	중로	2개 노선				720					
신설	중로	2	811	15	집산도로	480	동측구역계 (372-3)	북측구역계 (372-3)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812	15	집산도로	240	중로2-811	중로2-811	일반 도로		
소계	소로	2개 노선				103					
신설	소로	2	504	8	국지도로	33	중로2-811	남측구역계 (37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09	6	국지도로	70	중로2-811	남측구역계 (372-3)	일반 도로		

나)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경서동 372-3	-	증) 445	445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 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서부자원 순환공원	소공원	경서동 372-3	-	증) 473	473		

나) 녹 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 2,427	2,427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녹지1	완충녹지	경서동 372-3	-	증) 1,173	1,173		
신설	2	서부 자원순환 녹지2	완충녹지	경서동 372-3	-	증) 1,254	1,254		

3) 방재시설계획

가) 우수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우수지	저류시설	경서동 372-3	-	증) 797	797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5) 용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에서 기존 상수관로로 분기해 단지내 전량공급

구 분	일최대용수량 (㎥/일)	시간최대 용수량 (㎥/일)	비 고
계	205.85	305.03	
공업용수량	190.87	286.31	
생활용수량	14.98	18.72	

6) 하수처리계획

가) 오·폐수처리계획

○ 오·폐수처리는 사업지구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전량처리

구 분	일평균오·폐수량 (㎥/일)	일최대오·폐수량 (㎥/일)	시간최대오·폐수량 (㎥/일)
계	98.04	98.04	142.60
폐수량	86.92	86.92	126.43
오수량	11.12	11.12	16.17

나)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7) 폐기물처리계획

가) 폐기물량 산정

구 분	원단위	적용원단위	계획인구	발생량
생활폐기물	0.78kg/인·일	0.23	156인	35.9kg/인·일
분 노	0.77L/인·일	0.23		35.9L/인·일
사업장폐기물	3.08kg/인·일	0.90		140.4kg/인·일

주) 적용원단위는 인천광역시의 총 발생량으로 11개의 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군(강화군, 옹진군)·청(경제청)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30%를 적용함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은 매립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으로 구분 및 발생하는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사업장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단지내 재활용산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기타 부산물 및 처리가 안되는 폐기물은 위탁처리
-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보관시설에 보관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8) 통신공급계획

- 한국통신 인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계획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 고
총 계	-	-	19	여유율 30%적용
산업시설용	150	1대/10인	15	
지원시설용	5	1대/3인	2	
공급처리시설용	1	1대/3인	1	
공중전화	156	1회선/500인	1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총괄(변경)

■ 기정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27,283	100.0	
설계비	440	1.6	
공사비	4,327	15.9	
분담금 및 보조비	119	0.4	
보상비	22,397	82.1	

■ 변경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37,616	100.0	
설계비	440	1.2	
공사비	7,580	20.2	
분담금 및 보조비	125	0.3	
보상비	28,674	76.2	
기타비용	797	2.1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2013년)	2단계(2014년)	3단계(2015년)	4단계(2016년)
합 계	27,283	175	175	23,807	3,126
국 비	-	-	-	-	-
특별교부세	-	-	-	-	-
도 비	-	-	-	-	-
시·군·구비	-	-	-	-	-
지방채	-	-	-	-	-
기타(민자)	27,283	175	175	23,807	3,126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7,616	175	175	500	1,000	1,000	1,000	30,000	3,766
국 비	-	-	-	-	-	-	-	-	-
특별교부세	-	-	-	-	-	-	-	-	-
도비	-	-	-	-	-	-	-	-	-
시군구비	-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타(민자)	37,616	175	175	500	1,000	1,000	1,000	30,000	3,766

다.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규 모(백만원)	내 용
총사업비	27,283	
보상비	22,397	
조성비	4,886	조사설계비, 공사비, 분담 및 보조비, 부대비 포함
자체부담금	27,283	사업비의 100% 반영

■ 변경

구 분	규 모(백만원)	내 용
총사업비	37,616	
보상비	28,674	
조성비	8,942	조사설계비, 공사비, 분담 및 보조비, 부대비 포함
자체부담금	37,616	사업비의 100% 반영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불입(변경)

11. 에너지 사용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소요전력은 한전과 협의하여 인근 변전소로부터 공급토록 계획

구 분		용량	비 고
합성 설비용량 (kVA)	합 계	3,059	부등률 1.35적용
	산 업 시 설	2,971	
	지원 및 기반시설	88	
합성 최대부하 (kW)	합 계	2,307	
	산 업 시 설	2,228	
	지원 및 공공시설	79	

나. 에너지공급계획

- 연료공급은 인천도시가스(주)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단위 : Gcal/년)

구 분	계	공정열		난방 /급탕	냉방용	취사용
		직접열	간접열			
계	53,278	36,840	11,086	5,045	302	5
생산시설용지	47,926	36,840	11,086	-	-	-
지원 및 기반시설용지	5,352	-	-	5,045	302	5
지원시설	1,901	-	-	1,594	302	5
수질오염방지시설	3,451	-	-	3,451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가.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면적 (㎡)	구성비 (%)	비 고
대분류	중 분 류			
C.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8,097	1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 할 것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8 폐기물 수습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나.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기존업체 재입주

다.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II.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기존 사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정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 서구 지역 환경 및 경관 개선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면 적 : 56,256㎡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 민간개발
- 시행기간 : 2013년 ~ 2020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잡종지, 답, 제방의 지목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잡종지	제 방	기 타	비 고
면 적 (㎡)	56,256	1,826	52,491	1,939	-	
구성비 (%)	100.0	3.3	93.3	3.4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계	56,256	100.0	
산업시설용지	38,097	67.7	
지원시설용지	482	0.9	
공공시설용지	17,677	31.4	
공원·녹지	2,900	5.1	
공 원	473	0.8	
녹 지	2,427	4.3	
유수지	797	1.4	
수질오염방지시설	1,088	2.0	
주차장	445	0.8	
도 로	12,447	22.1	시설도로 : 11,724㎡

※ 상기 도로면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 및 사업부지 경계부 존치되는 현황도로를 합산한 면적임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시 설 명	주요내용	면 적(㎡)	비 고
도 로	4개 노선 (823 m)	중로(2개노선) : 720m 소로(2개노선) : 103m	
주 차 장	1개소	445	
공 원	1개소	473	소공원
녹 지	2개소	2,427	완충녹지
유 수 지	1개소	797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	1,088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계획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4	823	11,724	-	-	-	3	753	11,268	1	70	456
중 로	2	720	10,991	-	-	-	2	720	10,991	-	-	-
소 로	2	103	733	-	-	-	1	33	277	1	70	45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4개 노선										
소계	중로	2개 노선				720					
신설	중로	2	811	15	집산도로	480	동측구역계 (경서동372-3)	북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812	15	집산도로	240	중로2-811	중로2-811	일반 도로		
소계	소로	2개 노선				103					
신설	소로	2	504	8	국지도로	33	중로2-811	남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09	6	국지도로	70	중로2-811	남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나)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경서동 372-3	-	증) 445	445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 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소공원1	소공원	경서동 372-3	-	증) 473	473		

나) 녹 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 2,427	2,427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녹지1	완충녹지	경서동 372-3	-	증) 1,173	1,173		
신설	2	서부 자원순환 녹지2	완충녹지	경서동 372-3	-	증) 1,254	1,254		

3) 방재시설계획

가) 우수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우수지	저류시설	경서동 372-3	-	증) 797	797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5) 용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에서 기존 상수관로로 분기해 단지내 전량공급

구 분	일최대용수량 (㎥/일)	시간최대 용수량 (㎥/일)	비 고
계	205.85	305.03	
공업용수량	190.87	286.31	
생활용수량	14.98	18.72	

6) 하수처리계획

가) 오·폐수처리계획

○ 오·폐수처리는 사업지구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전량처리

구 분	일평균오·폐수량 (㎥/일)	일최대오·폐수량 (㎥/일)	시간최대오·폐수량 (㎥/일)
계	98.04	98.04	142.60
폐수량	86.92	86.92	126.43
오수량	11.12	11.12	16.17

나)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7) 폐기물처리계획

가) 폐기물량 산정

구 분	원단위	적용원단위	계획인구	발생량
생활폐기물	0.78kg/인·일	0.23	156인	35.9kg/인·일
분 뇨	0.77L/인·일	0.23		35.9L/인·일
사업장폐기물	3.08kg/인·일	0.90		140.4kg/인·일

주) 적용원단위는 인천광역시의 총 발생량으로 11개의 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군(강화군, 옹진군)·청(경제청)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30%를 적용함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은 매립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으로 구분 및 발생하는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사업장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단지내 재활용산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기타 부산물 및 처리가 안되는 폐기물은 위탁처리
-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보관시설에 보관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8) 통신공급계획

- 한국통신 인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계획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 고
총 계	-	-	19	여유율 30%적용
산업시설용	150	1대/10인	15	
지원시설용	5	1대/3인	2	
공급처리시설용	1	1대/3인	1	
공중전화	156	1회선/500인	1	

8. 위치도(변경없음) : 생략

9.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10.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총괄(변경)

■ 기정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27,283	100.0	
설계비	440	1.6	
공사비	4,327	15.9	
분담금 및 보조비	119	0.4	
보상비	22,397	82.1	

■ 변경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37,616	100.0	
설계비	440	1.2	
공사비	7,580	20.2	
분담금 및 보조비	125	0.3	
보상비	28,674	76.2	
기타비용	797	2.1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2013년)	2단계(2014년)	3단계(2015년)	4단계(2016년)
합 계	27,283	175	175	23,807	3,126
국 비	-	-	-	-	-
특별교부세	-	-	-	-	-
도 비	-	-	-	-	-
시·군·구비	-	-	-	-	-
지방채	-	-	-	-	-
기타(민자)	27,283	175	175	23,807	3,126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7,616	175	175	500	1,000	1,000	1,000	30,000	3,766
국 비	-	-	-	-	-	-	-	-	-
특별교부세	-	-	-	-	-	-	-	-	-
도비	-	-	-	-	-	-	-	-	-
시군구비	-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타(민자)	37,616	175	175	500	1,000	1,000	1,000	30,000	3,766

다.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규 모(백만원)	내 용
총사업비	27,283	
보상비	22,397	
조성비	4,886	조사설계비, 공사비, 분담 및 보조비, 부대비 포함
자체부담금	27,283	사업비의 100% 반영

■ 변경

구 분	규 모(백만원)	내 용
총사업비	37,616	
보상비	28,674	
조성비	8,942	조사설계비, 공사비, 분담 및 보조비, 부대비 포함
자체부담금	37,580	사업비의 100% 반영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6,256	100.0	
산업시설용지	38,097	6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
지원시설용지	482	0.9	
공공시설용지	17,677	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 당해 시설물 관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녹 지	2,427	4.3	
소공원	473	0.8	
유수지	797	1.4	
수질오염방지시설	1,088	2.0	
도 로	12,447	22.1	
주차장	445	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

13.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4.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 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 대책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생략
16.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업 없음
17.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

구 분	면 적(m ²)	금 액(백만원)	비 고
합 계	17,213	975	
녹 지	2,427	271	
소공원	473	52	
유수지	797	45	
수질오염방지시설	1,088	471	
도 로	12,447	136	

나. 사업시행자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사항 없음

19.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20.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6,256	-	56,256	100.0	
도시 지역	소 계	-	증) 56,256	56,256	100.0	
	일반공업지역	-	증) 56,256	56,256	100.0	
	소 계	56,256	감) 56,256	-	-	
	자연녹지지역	56,256	감) 56,256	-	-	

나)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일원	합 계		56,256	-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56,256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성에 따른 입주기업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인천 서구 자원순환특화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경서동 372-3 일원	-	증)56,256	56,25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1	서구 경서동 372-3 일원	56,256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산업단지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① 도로

(1) 도로 총괄표

구 분	류 별	합 계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823	11,724	3	753	11,268	1	70	456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720	10,991	2	720	10,991	-	-	-
	신설 소로	2	103	733	1	33	277	1	70	456

(2)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신설	중로	2	811	15	집산 도로	480	동측구역계 (경서동372-3)	북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812	15	집산 도로	240	중로2-811	중로2-81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33	중로2-811	남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09	6	국지 도로	70	중로2-811	남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 소로2-504호선은 현황도로(관습도로)의 단지 내 구간임

(3)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2-811	• 도로신설 B=15m, L=480m	•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획지분할 및 집산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2-812	• 도로신설 B=15m, L=240m	•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획지분할 및 집산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2-504	• 도로신설 B=8m, L=33m	•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기존현황 도로 연계도로 신설
-	소로 3-509	• 도로신설 B=6m, L=70m	•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인접지역 연결도로 신설

②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경서동 372-3	-	증) 445	445		

(2)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 주차장신설 - A=445㎡	• 산업단지 근로자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① 공 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소공원1	소공원	경서동 372-3	-	증) 473	473		

(2) 공원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부 자원순환 소공원1	• 소공원 신설 - A = 473㎡	• 보행자에게 일시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해 소공원 신설

②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증)2,427	2,427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녹지1	완충 녹지	경서동 372-3	-	증)1,173	1,173		
신설	2	서부 자원순환 녹지2	완충 녹지	경서동 372-3	-	증)1,254	1,254		

(2) 녹지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부 자원순환 녹지1	• 위치 :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A = 1,173㎡	• 각종 공해 · 사고 ·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2	서부 자원순환 녹지2	• 위치 :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A = 1,254㎡	• 각종 공해 · 사고 ·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다) 방재시설

① 유수지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경서동 372-3	-	증) 797	797		

(2)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 저류시설 신설 - A = 797㎡	• 강우로 인한 피해방지 및 단지내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유수지 신설

라) 환경기초시설

① 수질오염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2)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종말처리 시설 신설 - A = 1,088㎡	• 오·폐수를 1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지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단지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신설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38,097	-	38,097	
A1		10,973	A1	10,973	
A2		16,596	A2	16,596	
A3		5,161	A3	5,161	
A4		5,367	A4	5,367	

※ 획지분할 가능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38,097	-	38,097	-
A1	소계	10,973	-	10,973	-
	①	1,486	A1-①	1,486	
	②	932	A1-②	932	
	③	1,270	A1-③	1,270	
	④	1,117	A1-④	1,117	
	⑤	2,845	A1-⑤	2,845	
	⑥	1,652	A1-⑥	1,652	
	⑦	1,320	A1-⑦	1,320	
	⑧	351	A1-⑧	351	
A2	소계	16,596	-	16,596	-
	①	883	A2-①	883	
	②	1,234	A2-②	1,234	
	③	1,719	A2-③	1,719	
	④	4,494	A2-④	4,494	
	⑤	1,512	A2-⑤	1,51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⑥	2,146	A2-⑥	2,146	
	⑦	2,310	A2-⑦	2,310	
	⑧	2,298	A2-⑧	2,298	
A3	소계	5,161	-	5,161	-
	①	1,647	A3-①	1,647	
	②	3,514	A3-②	3,514	
A4	소계	5,367	-	5,367	-
	①	372	A4-①	372	
	②	470	A4-②	470	
	③	568	A4-③	568	
	④	1,008	A4-④	1,008	
	⑤	1,117	A4-⑤	1,117	
	⑥	1,436	A4-⑥	1,436	
	⑦	396	A4-⑦	396	

※ 획지분할 불허

② 지원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B1		482	B1	482	

※ 획지분할 가능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B1		482	B1	482	

※ 획지분할 불허

③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C1		445	C1	445	

④ 폐수종말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D1		1,088	D1	1,088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A4	산업시설 용지블록 A1~A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할 것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건축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여 일관성 및 통일감 형성 • 지붕 설치시 경사지붕 설치 권장(평지붕 설치시 지붕면적 기준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 대지내 모든 보관시설은 허가받은 건축물내에 설치하여 밀폐화 되도록하고, 외부 적치는 금지한다. 또한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한다. • 건축물과 대지경계는 방음·방진용 수목 식재를 권장 한다.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중로 2-811, 중로2-812 예각교차구간 각각기준 건축한계선 4m 지정(회전구간 시야확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분할 가능 •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대지내 공지는 단지내 휴계공간(삼지공원 등)으로 활용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주 1) 건축물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A4	산업시설 용지블록 A1~A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할 것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건축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여 일관성 및 통일감 형성 • 지붕 설치시 경사지붕 설치 권장(평지붕 설치시 지붕면적 기준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 대지내 모든 보관시설은 허가받은 건축물내에 설치하여 밀폐화 되도록하고, 외부 적치는 금지한다. 또한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한다. • 건축물과 대지경계는 방음·방진용 수목 식재를 권장 한다.
		색 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종로 2-811, 종로2-812 예각교차구간 각각기준 건축한계선 4m 지정(회전구간 시야확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분할 불허 •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대지내 공지는 단지내 휴계공간(쌈지공원 등)으로 활용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주 1) 건축물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② 지원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지원시설 용지 블록 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 판매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함)·연구소에 한함)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층수 5층(25m) 이하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 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지붕 설치시 경사지붕 설치 권장 • 담장은 가능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도록 하고, 설치시 높이 1.2m이하로 설치하도록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한계선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준하여 설치할 것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지원시설 용지 블록 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 판매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함)·연구소에 한함)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5층(25m) 이하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 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지붕 설치시 경사지붕 설치 권장 • 담장은 가능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도록 하고, 설치시 높이 1.2m이하로 설치하도록 권장 	
		색 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한계선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분할 불허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주 1) 건축물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③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주차장 용지 블록 C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주차장전용 건축물 건립시 주차장의 사용되는 비율은 연면적의 30% 이내로 하며, 허용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층수 5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가능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도록 하고, 설치시 높이 1.2m 이하로 설치하도록 권장 	
		배 치	-	
		건축한계선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준하여 설치할 것 	
기타	-			

④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폐수종말 처리시설 블록 D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대시설 포함)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이하 	
		높 이	-	
		형 태	-	
		배 치	-	
		건축한계선	-	
		기 타	-	
기타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①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A4,	A1~A4,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름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표시된 도로구간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대지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도로의 교통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웃하는 인접대지와 공동차량출입구를 설치하거나 차량출입구의 위치가 인접대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②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름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표시된 도로구간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경미한 변경사항(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 향후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

마) 지침적용 사항(변경없음)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인천광역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시설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시설개소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부지면적 증감내용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73.00㎡	27개소					
공 원 시 설	기반 시설	광장	87.76㎡				
	조경시설		4.25㎡	18개소			
	휴양시설		1.52㎡	3개소			
	운동시설			3개소			
	편익시설			3개소			
녹 지 및 기 타	379.47㎡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개소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부지 면적증감 내용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473.00㎡	27개소						
기 반 시 설	계			87.76㎡							
	진입광장	1-1		10.35㎡							
	휴게광장1	2-1		21.9㎡							
	휴게광장2	2-2		42.78㎡							
	연결광장	3-1		12.73㎡							
조 경 시 설	계			4.25㎡	18개소						
	반원형 파고라	①			1개소 (10.5㎡)						
	디딤석	②		4.25㎡	17개소						
휴 양 시 설	계			1.52㎡	3개소						
	앉음벽	③		1.52㎡	1개소						
	등의자	④			2개소 (2.0㎡)						
운 동 시 설	계	⑤			3개소						
	체력단련 시설				3개소						
편 익 시 설	계	⑥			3개소						
	공원등				3개소						
녹지 및 기타시설				379.47㎡							

21.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22.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23. 문화재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24. 피해영향조사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25.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 게재생략
2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관련도서 : 「별첨」(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 (☎032-560-5903)

붙임

□ 토지세목조사(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기정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3	잡	52,491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인천항만공사	
	변경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3	잡	52,491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서부환경 사업협동조합	
2	기정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4	답	1,826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인천항만공사	
	변경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4	답	1,826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서부환경 사업협동조합	
3	기정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5	제	882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인천항만공사	
	변경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5	제	882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서부환경 사업협동조합	
4	기정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8	제	1,057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인천항만공사	
	변경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8	제	1,057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인천서부환경 사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253호

도시관리계획(블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블로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577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블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789번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블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일원	310,521.8	-	310,521.8	인고 제2013-188호 (2013.11.25)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0,521.8	-	310,521.8	100.0	
주거지역	365,707.4	-	365,707.4	93.6	
제1종일반주거지역	95,237.3	-	95,237.3	30.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141.4	-	106,141.4	34.2	
제3종일반주거지역	89,209.7	-	89,209.7	28.7	
일반상업지역	19,933.4	-	19,933.4	6.4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가) 교통시설 (변경있음)

① 도로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3	7,015.0 (16,397.0)	74,630.9 (305,458.6)	4	964.0 (1,788.0)	9,872.7 (30,880.0)	23	4,093.0 (4,398.0)	40,995.3 (45,510.6)	16	1,817.0 (10,070.0)	22,643.4 (227,948.5)
대로	1	257.0 (8,510.0)	7,444.9 (212,750.0)	-	-	-	-	-	-	1	257.0 (8,510.0)	7,444.9 (212,750.0)
중로	8	2,752.0 (3,831.0)	35,265.9 (60,384.0)	1	476.0 (1,300)	4,992.7 (26,000)	4	1,156.0 (1,411.0)	16,811.5 (20,922.3)	3	1,120.0	13,461.7
소로	34	3,865.0 (3,915.0)	30,800.6 (31,205.1)	3	488.0	4,880.0	19	2,937.0 (2,987.0)	24,183.8 (24,588.3)	12	440.0	1,736.8
기타	-	-	486.2	-	-	-	-	-	-	-	-	-

※ ()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 기타는 가각, 현황도로, 버스베이 및 도로부속시설에 의한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3	58	25	주간선 도 로	257 (8,510)	동측지구계 (도시계획동측 구역계)	서측지구계 (광로3-23호선)	일반도로		1999.6.23	
중로	1	121	20	보조간선 도 로	476 (1,300)	대로 3-58호선	남측지구계 (중로1-116호선)	일반도로		1999.6.23	
중로	2	171	15~20	집산도로	279	대로 3-58호선	중로 3-93호선	일반도로		1999.6.23	
중로	2	172	15	집산도로	602	중로 1-121호선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1999.6.23	

※ ()는 도로 전체 폭원 및 연장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73	15	집산도로	218	중로3-94호선	중로3-93호선	일반도로		2009.11.2	
중로	2	174	9 (15)	집산도로	57 (312)	소로2-28호선	소로2-2호선	일반도로			
중로	3	90	12	집산도로	435	대로 3-58호선	중로 2-174호선	일반도로			
중로	3	93	12 ~13.5	집산도로	791	중로1-121호선	중로2-172호선	일반도로		1999.6.26	
중로	3	94	12	집산도로	35	중로 2-173호선	중로3-93호선	일반도로		2009.11.2	
소로	1	1	10	국지도로	355	중로 2-172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1	2	10	국지도로	18	중로 2-171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5	중로2-172호선	중로 3-93호선	일반도로		2000.6.26	
소로	2	5	8	국지도로	19 (69)	소로 2-14호선	공동주택 9BL	일반도로			
소로	2	6	8	국지도로	94	소로 2-12호선	소로 2-23호선	일반도로			
소로	2	7	8	국지도로	71	소로 2-12호선	소로 2-23호선	일반도로			
소로	2	8	8	국지도로	294	소로2-14호선	소로 2-12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9	8	국지도로	172	중로 3-90호선	소로 2-14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0	8	국지도로	40	소로 2-11호선	소로 2-8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1	8	국지도로	121	대로 3-58호선	중로 3-90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2	8	국지도로	441	대로 3-58호선	중로 2-174호선	일반도로			
소로	2	13	8	국지도로	123	대로 3-58호선	소로 2-9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4	8	국지도로	429	대로 3-58호선	중로 3-90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5	8	국지도로	255	소로 2-14호선	소로 2-14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6	8	국지도로	281	중로 2-172호선	중로 2-172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7	8	국지도로	71	소로 2-16호선	소로 2-16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8	8	국지도로	73	소로 2-16호선	소로 2-16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9	8	국지도로	73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0	8	국지도로	125	중로 3-93호선	중로 2-172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1	8	국지도로	116	소로 2-20호선	소로 1-3호선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2	8	국지도로	99	소로 2-20호선	소로 1-3호선	일반도로		2000.6.26	
소로	2	25	8	국지도로	40	중로 3-94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2009.11.2	
소로	3	2	6	국지도로	20	소로 2-13호선	15-3BL 13LOT	일반도로		2013.11.2	
소로	3	3	4	국지도로	9	중로 3-93호선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2000.6.26	
소로	3	4	4	국지도로	15	소로 3-6호선	소로 2-15호선	일반도로		2009.11.2	

※ ()는 도로 전체 폭원 및 연장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6	4	특수도로	8	대로 3-58호선	소로3-6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7	4	특수도로	15	중로 1-121호선	소로 2-16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8	4	특수도로	93	대로 3-58호선	제3호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9	4	특수도로	37	소로 1-1호선	소로 2-16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2000.6.26	
소로	3	10	4	특수도로	19	대로 3-58호선	소로 1-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11	4	특수도로	18	중로 2-172호선	소로 1-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18	4	특수도로	121	중로 2-172호선	중로 3-93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19	4	특수도로	29	중로 3-93호선	소로 2-173호선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23	3	특수도로	56	중로 2-173호선	동측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2008.7.7	우수 관로 확보

②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불로동 356-3 일원	1,951.5	-	1,951.5	1999.06.23.	
변경	1	주차장	불로동 789	1,951.5	-	1,951.5	1999.06.23.	체육시설2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결정 - 체육시설2와 중복 위치 표기 정정 - 현 지번으로 위치표기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로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을 중복결정 현 지번으로 위치 표기 정정

나) 공간시설 (변경있음)

① 공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개 소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	-	10	13,488.4	-	13,488.4
어린이공원	5	-	5	10,618.4	-	10,618.4
소 공 원	5	-	5	2,870.0	-	2,870.0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488.4	-	13,488.4	-	
기정	1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431 일원	2,560.7	-	2,560.7	1999.6.23	
변경	1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766-1	2,560.7	-	2,560.7	1999.6.23	
기정	2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산177-3 일원	1,532.9	-	1,532.9	1999.6.23	
변경	2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773-8	1,532.9	-	1,532.9	1999.6.23	
기정	3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456-3 일원	1,513.3	-	1,513.3	1999.6.23	
변경	3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785-10	1,513.3	-	1,513.3	1999.6.23	
기정	4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353-7 일원	2,758.1	-	2,758.1	1999.6.23	
변경	4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793-2	2,758.1	-	2,758.1	1999.6.23	
기정	5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343-4 일원	2,253.4	-	2,253.4	1999.6.23	
변경	5	공 원	어린이공원	불로동 802-6	2,253.4	-	2,253.4	1999.6.23	
기정	1	공 원	소공원	불로동 348-1 일원	434.4	-	434.4	2008.7.7	
변경	1	공 원	소공원	불로동 802-5	434.4	-	434.4	2008.7.7	
기정	2	공 원	소공원	불로동 산74 일원	512.0	-	512.0	2009.11.2	
변경	2	공 원	소공원	불로동 801-2	512.0	-	512.0	2009.11.2	
기정	3	공 원	소공원	불로동 341-1 일원	1,010.0	-	1,010.0	2009.11.2	
변경	3	공 원	소공원	불로동 803-5	1,010.0	-	1,010.0	2009.11.2	
기정	4	공 원	소공원	불로동 367 일원	367.9	-	367.9	2013.11.25	
변경	4	공 원	소공원	불로동 839	367.9	-	367.9	2013.11.25	
기정	5	공 원	소공원	불로동 332-3 일원	545.7	-	545.7	2013.11.25	
변경	5	공 원	소공원	불로동 799-1	545.7	-	545.7	2013.11.25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2,3,4,5	공 원	어린이공원	•위치 표기 정정 - 현 지번으로 위치표기 정정	•현 지번으로 위치 표기 정정
1,2,3,4,5	공 원	소공원	•위치 표기 정정 - 현 지번으로 위치표기 정정	•현 지번으로 위치 표기 정정

②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2,457.6		2,457.6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348-2 일원	694.3	-	694.3	2009.11.2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803-7	694.3	-	694.3	2009.11.2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344-3 일원	144.9	-	144.9	2009.11.2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803-6	144.9	-	144.9	2009.11.2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산181-2 일원	395.7	-	395.7	2013.11.25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820	395.7	-	395.7	2013.11.25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산188-1 일원	230.5	-	230.5	2013.11.25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821	230.5	-	230.5	2013.11.25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414-8 일원	37.0	-	37.0	2013.11.25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824	37.0	-	37.0	2013.11.25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445 일원	75.7	-	75.7	2013.11.25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825	75.7	-	75.7	2013.11.25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산47-1 일원	879.5	-	879.5	2013.11.25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불로동 837 일원	879.5	-	879.5	2013.11.25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2,3,4,7,8,9	녹 지	•위치 표기 정정 - 현 지번으로 위치표기 정정	•현 지번으로 위치 표기 정정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있음)

①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불로동 338-3 일원	12,002.0	-	12,002.0	2002.6.23	
변경	1	학 교	초등학교	불로동 799-2 일원	12,002.0	-	12,002.0	2002.6.23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학 교	•위치 표기 정정 - 현 지번으로 위치표기 정정	•현 지번으로 위치 표기 정정

②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파출소	블로동 446-9 일원	614.4	-	614.4	1999.6.23	
변경	1	공공청사	파출소	블로동 772-1	614.4	-	614.4	1999.6.23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공공청사	•위치 표기 정정 - 현 지번으로 위치표기 정정	•현 지번으로 위치 표기 정정

③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블로동 445-3 일원	507.1	-	507.1	2008.07.07.	
변경	1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블로동 785-4	507.1	-	507.1	2008.07.07.	
신설	2	체육시설	복합 체육관	블로동 789	-	증)1,951.5	1,951.5	-	주차장1 중복결정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체육시설	•위치 표기 정정 - 현 지번으로 위치표기 정정	•현 지번으로 위치 표기 정정
2	체육시설	•체육시설 신설 및 중복 결정 - 주차장1과 중복 - 면적 : 1,951.5㎡	•열악한 생활체육여건을 개선하고, 체육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블로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 신설

④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블로동 456-4 일원	242.7	-	242.7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변경	1	사회복지시설	블로동 785-3	242.7	-	242.7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사회복지시설	•위치 표기 정정 - 현 지번으로 위치표기 정정	•현 지번으로 위치 표기 정정

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단독주택(A-1)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A-1	1	2,111.3	1	275.2	275.2	
			2	284.7	284.7	
			3	379.6	379.6	
			4	327.0	327.0	
			5	600.6		2필지 분할가능
			6	244.2	244.2	
A-1	2	3,170.3	1	374.1	374.1	
			2-1	257.7	257.7	
			2-2	257.8	257.8	
			3	248.5	248.5	
			4	371.8	371.8	
			5	217.9	217.9	
			11	235.1	235.1	
			6	217.5	217.5	
			10	214.3	214.3	
			7	250.9	250.9	
			8	247.0	247.0	
			9	277.7	277.7	
			A-1	3	3,911.4	1
2	483.3	483.3				
3	344.0	344.0				
4	386.7	386.7				
5	456.6					2필지 분할가능
6	258.2	258.2				
7	270.7	270.7				
8	279.7	279.7				
11	287.6	287.6				
9	435.9					2필지 분할가능
10	418.3					2필지 분할가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A-1	6	6,021.4	1	457.7		2필지 분할가능
			2	459.1	459.1	
			3	480.7	480.7	
			4	300.4	300.4	
			5	272.3	272.3	
			6	323.0	323.0	
			7	441.6	441.6	
			8	139.2	139.2	
			9	110.1	110.1	
			10	780.9		2필지 분할가능
			11	340.5	340.5	
			12-1	384.3	384.3	
			12-2	384.1	384.1	
			13	294.8	294.8	
			14	476.5		2필지 분할가능
15	376.2	376.2				
A-1	7-1	2,777.7	1	339.1	339.1	
			2	314.6	314.6	
			3	322.3	322.3	
			10	320.5	320.5	
			4	340.4	340.4	
			5-1	311.5	311.5	
			5-2	594.6		2필지 분할가능
			6	234.7	234.7	
A-1	8-1	2,583.5	1	472.6	472.6	
			2	690.6		2필지 분할가능
			3	382.8	382.8	
			4	767.4		2필지 분할가능
			5	270.1	270.1	
A-1	9	1,467.3	1	790.2		2필지 분할가능
			2	443.4	443.4	
			3	233.7	233.7	
A-1	10	1,959.0	1-1	173.6	173.6	
			1-2	316.0	316.0	
			2	544.9		2필지 분할가능
			3	777.5		2필지 분할가능
			4	147.0	147.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대지면적(m ²)	획지면적(m ²)	비 고
A-1	11-1	4,080.8	1	898.7		3필지 분할가능
			2	573.6	573.6	
			3	504.9		2필지 분할가능
			4	709.3		2필지 분할가능
			5	490.9		2필지 분할가능
			6	356.4	356.4	
			7	314.0		2필지 분할가능
			8	233.0	233.0	
A-1	12-1	3,586.0	1	432.3	432.3	
			2	614.4		2필지 분할가능
			3	600.3		2필지 분할가능
			4	479.4		2필지 분할가능
			5	494.5	494.5	
			6	417.1	417.1	
			7	548.0		2필지 분할가능
A-1	14-1	1,652.2	1	358.8	358.8	
			2	280.7	280.7	
			3	335.1	335.1	
			4	279.1	279.1	
			5	398.5	398.5	
A-1	15-3	3,300.5	6	202.2	202.2	
			7	202.0	202.0	
			8	202.1	202.1	
			9	207.9	207.9	
			10	231.4	231.4	
			11	743.3		2필지 분할가능
			12	755.9		2필지 분할가능
			13	755.7		2필지 분할가능
A-1	17	3,983.8	1	482.1		2필지 분할가능
			2	329.5	329.5	
			3	350.1	350.1	
			4	347.1	347.1	
			11	344.3	344.3	
			5	236.0	236.0	
			6	354.3	354.3	
			7	534.2		2필지 분할가능
			8	534.3		2필지 분할가능
			9	270.2	270.2	
10	201.7	201.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대지면적(m ²)	획지면적(m ²)	비 고
A-1	19-1	372.2	1	372.2		2필지 분할가능
A-1	21	1,776.5	1	319.4	319.4	
			2-1	221.3	221.3	
			2-2	190.6	190.6	
			3	347.1		2필지 분할가능
			4	268.4	268.4	
			5-1	222.6	222.6	
			5-2	207.1	207.1	
A-1	22	2,203.6	1	269.1	269.1	
			2	160.2	160.2	
			3	210.0	210.0	
			4	160.0	160.0	
			5	249.7	249.7	
			6	249.9	249.9	
			7	668.3		2필지 분할가능
			8	236.4	236.4	
A-1	23	2,266.4	1	280.8	280.8	
			2	392.4		2필지 분할가능
			3	159.8	159.8	
			4	305.3	305.3	
			5	198.9	198.9	
			6-1	213.1	213.1	
			6-2	213.2	213.2	
			6-3	213.2	213.2	
7	289.7	289.7				
A-1	24	1,293.6	1	345.7	345.7	
			2-1	247.1	247.1	
			2-2	247.1	247.1	
			3-1	225.5	225.5	
			3-2	228.2	228.2	
A-1	25	578.6	1	336.1	336.1	
			2	242.5	242.5	
A-1	35-2	1,519.9	5-1	228.7	228.7	
			5-2	234.4	234.4	
			6	211.5	211.5	
			7	265.7	265.7	
			8	149.0	149.0	
			9-1	212.3	212.3	
			9-2	218.3	218.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A-1	36	4,597.5	1	238.1	238.1	
			2	273.4	273.4	
			3	365.3	365.3	
			4	394.5	394.5	
			5	381.8	381.8	
			6	548.2		2필지 분할가능
			7	652.5		2필지 분할가능
			8	563.1		2필지 분할가능
			9	305.6	305.6	
			10	240.4	240.4	
			11	263.7	263.7	
			12	370.9	370.9	
A-1	37	3,407.6	1	293.0	293.0	
			2	283.2	283.2	
			3	139.8	139.8	
			4	139.8	139.8	
			5	279.5	279.5	
			6	264.2	264.2	
			7	268.6	268.6	
			8	294.8	294.8	
			9	293.0	293.0	
			10	279.1	279.1	
			11	222.2	222.2	
			12	160.0	160.0	
			13	190.7	190.7	
			14	299.7	299.7	
A-1	38-2	3,016.1	3	190.2	190.2	
			4	319.1	319.1	
			5	229.4	229.4	
			6	180.3	180.3	
			7	168.1	168.1	
			8	200.6	200.6	
			9	218.0	218.0	
			10	352.4	352.4	
			11	139.5	139.5	
			12-1	231.4	231.4	
			12-2	184.9	184.9	
			13	203.3	203.3	
			14	140.6	140.6	
			15	258.3	258.3	

② 단독주택(A-2)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A-2	7-3	751.6	8	375.9	375.9	
			9	375.7	375.7	
A-2	8-3	363.3	7	363.3	363.3	
A-2	11-2	2,208.1	9	2,208.1		5필지 분할가능
A-2	13-2	2,309.2	2	2,309.2		5필지 분할가능
A-2	14-2	2,195.2	6	258.3	258.3	
			7	633.8	633.8	
			8	562.2	562.2	
			9	330.8	330.8	
			10	410.1	410.1	
A-2	15-1	738.8	1	300.0	300.0	
			2	238.4	238.4	
			4	200.4	200.4	
A-2	15-4	2,004.2	14	711.4		2필지 분할가능
			15	1,292.8		3필지 분할가능
A-2	18	2,253.2	1	391.7	391.7	
			2	411.9	411.9	
			3	522.6		2필지 분할가능
			4	464.0	464.0	
			5	463.0	463.0	
A-2	19-2	533.3	-	40.0	40.0	3롯데 진입로
			2	166.2	166.2	
			3	327.1	327.1	
A-2	20	2,305.7	1	402.2	402.2	
			2	786.6		2필지 분할가능
			3	199.3	199.3	
			4	524.6		2필지 분할가능
			5	393.0	393.0	
A-2	26	1,350.1	1	342.6	342.6	
			2	221.4	221.4	
			3	321.2	321.2	
			4	464.9		2필지 분할가능
A-2	35-1	1,499.9	1	457.8		2필지 분할가능
			2	352.6	352.6	
			3	278.5	278.5	
			4	411.0		2필지 분할가능
A-2	38-1	439.9	1	217.4	217.4	
			2	222.5	222.5	

③ 공동주택(B-1)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B-1	41	2,924.5	1	603.6	603.6	공동개발 (권장)
			2	649.2	649.2	
			3	902.6	902.6	
			4	769.1	769.1	
B-1	42	1,942.0	1	689.2	689.2	공동개발 (권장)
			2	626.6	626.6	
			3	626.2	626.2	
B-1	47	5,118.3	1	940.2	940.2	2필지 분할가능
			2	1,972.7	1,972.7	
			3	888.4	888.4	
			4	1,317.0	1,317.0	
B-1	50-1	1,203.0	1	1,203.0	1,203.0	

④ 공동주택(B-2)용지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B-2	7-2	1,200.6	7	1,200.6	1,200.6	
B-2	8-2	2,383.4	6	2,383.4	2,383.4	
B-2	15-2	1,769.1	3	175.6	175.6	공동개발 (권장)
			5	1,593.5	1,593.5	

⑤ 공동주택(B-3)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B-3	16	4,809.6	1	4,809.6	4,809.6	
B-3	34	19,664.4	1	5,398.4	5,398.4	공동개발 (지정)
			2	14,266.0	14,266.0	
B-3	39	20,181.7	1	1,385.4	1,385.4	공동개발 (지정)
			2	5,115.3	5,115.3	
			3	3,511.0	3,511.0	
			4	1,563.2	1,563.2	
			5	5,892.9	5,892.9	
			6	2,713.9	2,713.9	
B-3	51-1	26,687.0	1	6,721.3	6,721.3	공동개발 (지정)
			2	19,965.7	19,965.7	

⑥ 공동주택(B-4)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B-4	44-1	27,301.1	1-1	9,366.4	9,366.4	공동개발 (지정)
			1-2	5,970.2	5,970.2	
			1-3	8,677.8	8,677.8	
			1-4	3,286.7	3,286.7	

⑦ 일반상업(C-1)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C-1	28	1,977.6	1	409.0	409.0	
			2	426.4	426.4	
			3	466.9	466.9	
			4	346.4	346.4	
			5	328.9	328.9	
C-1	29	2,842.1	1	300.9	300.9	
			2	336.7	336.7	
			8	344.6	344.6	
			3	503.1	503.1	
			4	397.4	397.4	
			5	326.5	326.5	
			6	321.7	321.7	
C-1	31	1,656.5	1	368.1	368.1	
			2	200.0	200.0	
			3	261.3	261.3	
			4	305.9	305.9	
			5	279.5	279.5	
			6	241.7	241.7	
C-1	32	1,125.5	1	451.0	451.0	
			2	458.5	458.5	
			3	216.0	216.0	
C-1	33	1,038.9	1	331.8	331.8	
			2	348.9	348.9	
			3	358.2	358.2	

⑧ 학교(D-1)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D-1	40-1	12,002.0	1	968.0	968.0	
			2	11,034.0	11,034.0	

⑨ 공공청사(D-2)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D-2	13-1	614.4	1	614.4	614.4	

⑩ 체육시설(D-3)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기정	D-3	25	507.1	3-1	507.1	507.1	게이트볼장
신설	D-3	30	1,951.5	1	1,951.5	1,951.5	복합체육관 (주차장1 중복결정)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체육시설2 신설	•주차장1(30(1), 불로동 789번지)에 체육시설2 신설 및 중복결정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⑪ 사회복지시설(D-4)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D-4	25	242.7	3-2	242.7	242.7	노인여가복지시설

⑫ 주차장(D-5)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비 고
기정	D-5	30	1,951.5	1	1,951.5	1,951.5	
변경	D-5	30	1,951.5	1	1,951.5	1,951.5	체육시설2 중복결정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체육시설2 중복결정	•주차장1(30(1), 블로동 789번지)에 체육시설2 신설 및 중복결정에 따라, 가구 및 획지계획에 중복결정 표기

⑬ 획지의 합병 및 분할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대지를 기본단위로 개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구단위계획상 필지분할가능선이 있는 대지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변경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소 분할가능면적 이상으로 함

용도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블로지구 최소 분할가능면적	250㎡	11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① 단독주택(A-1)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율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형 태	•별표2의 A-1	
		배 치	•별표3의 A-1	
		색 채	•별표4의 A-1	
		건 축 선	•중로3-90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6(10~15), 10(1-1~4), 11(4~8) •중로3-9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7(8~14), 38-2(9~10) •중로2-171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8-2(3~9)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24(1~3-2), 21(5-2) •중로1-121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 21(1~5-2)	

주) ()는 획지번호임

② 단독주택(A-2)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2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A-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형 태	•별표2의 A-2	
		배 치	•별표3의 A-2	
		색 채	•별표4의 A-2	
		건 축 선	•중로1-121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 20(1) •중로2-171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8-1(1)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5-1(1~4), 38-1(1~2) •중로3-90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13-2(2) •대로3-58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 13-2(2), 14-2(6~8), 15-4(14~15), 18(1~5), 19-2(3), 20(1~5)	

주) ()는 획지번호임.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③ 공동주택(B-1)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41, 42, 47, 50-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B-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B-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형 태	•별표2의 B-1	
		배 치	•별표3의 B-1	
		색 채	•별표4의 B-1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41(1) •중로3-9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41(1~4), 42(1~3), 47(1~3), 50(1) 	

주) ()는 획지번호임.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④ 공동주택(B-2)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2	7-2, 8-2, 15-2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B-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B-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30%이하	
		용적율	•190%이하 (단, 15-2BL은 공동개발 이행시 200%이하)	
		높이	•10층이하	
		형 태	•별표2의 B-2	
		배 치	•별표3의 B-2	
		색 채	•별표4의 B-2	
		건축선	-	

주) ()는 획지번호임

⑤ 공동주택(B-3)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3	16, 34, 39, 51-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B-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B-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30%이하	
		용 적 율	•250%이하(단, 16, 39BL은 220%이하)	
		높 이	•20층이하(단, 16, 39BL은 15층이하)	
		형 태	•별표2의 B-3	
		배 치	•별표3의 B-3	
		색 채	•별표4의 B-3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121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 34(1), 51-1(1~2) •중로2-171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9(1, 6)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4(1~2), 39(1~3) •중로3-9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4(1~2), 39(4~6), 51-1(1) •대로3-58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 16(1) 	

주) ()는 획지번호임.

⑥ 공동주택(B-4)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4	44-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B-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B-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15%이하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27층이하	
		형 태	•별표2의 B-4	
		배 치	•별표3의 B-4	
		색 채	•별표4의 B-4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2-17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44-1(1-1~1-4) 	

주) ()는 획지번호임

⑦ 일반상업(C-1)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28, 29, 31, 32, 33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C-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율	•350%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별표2의 C-1	
		배 치	•별표3의 C-1	
		색 채	•별표4의 C-1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3-58호선변 → 건축한계선 : 2m - 가구번호 : 28(1~5), 32(1) •중로2-171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2(1~3), 33(1~3) •중로2-172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31(1~6) 	

주) ()는 획지번호임

⑧ 학교(D-1)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40-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D-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율	•100%이하	
		높 이	•5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3-93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40-1(1~2) 	

주) ()는 획지번호임

⑨ 공공청사(D-2)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2	13-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율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형 태	•별표2의 D-2	
		배 치	•별표3의 D-2	
		색 채	-	
건 축 선	•중로3-90호선변 → 건축한계선 : 1m - 가구번호 : 13-1(1)			

주) ()는 획지번호임

⑩ 체육시설(D-3)용지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3	25(3-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D-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D-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율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형 태	•별표2의 D-3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 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3	25(3-1), 30(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D-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D-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30(1)은 70%이하)	
		용 적 율	•150%이하. (30(1)은 350%이하)	
		높 이	•3층이하. (30(1)은 5층이하)	
		형 태	•별표2의 D-3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체육시설2 신설에 따른 계획	•주차장1(30(1), 불로동 789번지)에 체육시설2 신설 및 중복결정에 따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D-4)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4	25(3-2)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D-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율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형 태	•별표2의 D-4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⑫ 주차장(D-5)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5	30(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D-5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D-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율		•350%이하
		높 이		•5층이하
		형 태		•별표2의 D-5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주) ()는 획지번호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있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A-2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별표5의 A-1, A-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B-1 B-2 B-3 B-4	7-2, 8-2, 15-2, 16, 34, 39, 41, 42, 44-1, 47, 50-1, 51-1	•별표5의 B-1, B-2, B-3, B-4 전면공지, 단 지내 조경	
C-1	28, 29, 31, 32, 33	•별표5의 C-1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② 차량 및 주차계획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A-1 A-2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별표6의 A-1, A-2 차량동선, 주차시설	
B-1 B-2 B-3 B-4	7-2, 8-2, 15-2, 16, 34, 39, 41, 42, 44-1, 47, 50-1, 51-1	•별표6의 B-1, B-2, B-3, B-4 차량동선, 주차시설	
C-1	28, 29, 31, 32, 33	•별표6의 C-1 차량동선, 주차시설	
D-5	30(1)	•별표6의 D-5 차량동선, 주차시설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A-1 A-2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별표6의 A-1, A-2 차량동선, 주차시설	
B-1 B-2 B-3 B-4	7-2, 8-2, 15-2, 16, 34, 39, 41, 42, 44-1, 47, 50-1, 51-1	•별표6의 B-1, B-2, B-3, B-4 차량동선, 주차시설	
C-1	28, 29, 31, 32, 33	•별표6의 C-1 차량동선, 주차시설	
D-3, D-5	30(1)	•별표6의 D-5 차량동선, 주차시설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면번호 추가 -D-5 → D-3, D-5	• 주차장1(30(1), 불로동 789번지)에 체육시설2 신설 및 중복결정에 따른 도면번호 추가

③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A-1 A-2	1~3, 6, 7-1, 8-1, 9~10, 11-1, 12-1, 14-1, 15-3, 17, 19-1, 21~25, 35-2, 36~37, 38-2, 7-3, 8-3, 11-2, 13-2, 14-2, 15-1, 15-4, 18, 19-2, 20, 26, 35-1, 38-1	•별표7의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보차혼용도로	
B-1 B-2 B-3 B-4	7-2, 8-2, 15-2, 16,34, 39, 41, 42, 44-1, 47, 50-1, 51-1,	•별표7의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보차혼용도로	
C-1	28, 29, 31, 32, 33	•별표7의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보차혼용도로	

④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지내시설물	•별표8의 가로시설물, 식재, 포장, 조명시설, 간판 및 광고물, 기타사항	

⑤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공 원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의 특성과 계절감을 고려한 수목 선정 •공간기능, 다양한 디자인의 옥외시설물을 조화롭게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의 다양한 정서수용을 위한 경관 조성 •대상지 전역에 걸쳐 보행체계망을 구축하며, 이용권을 고려한 충분한 공원녹지 조성 •다양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운동, 놀이, 휴식활동을 수용하며, 공원안의 조경은 총면적의 50%이상 이 되도록 조경면적 확보 •공원내 도로, 광장, 관리시설은 반드시 설치도록 함(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지면적 : 60%이하(어린이공원) - 건폐율 : 5%이하 설치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부속시설부지에는 각종 공해(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고, 재해의 방지와 경관의 시각적 효과를 살리며, 집중적인 녹화계획으로 녹음수, 화초류 등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성활엽교목과 침엽교목을 밀식하여 풍부한 수림대 조성 •소음차단 및 시각차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식재밀도를 높여 경관성 제고 및 차폐성 강조 	

⑥ 기타사항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군부대 협의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계획 (변경있음)

■ 기정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A-1	•단독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60	150	3층이하
A-2	•단독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노인복지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침해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지하층 주거용도	60	200	5층이하
B-1	•연립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0	200	4층이하
B-2	•중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90	10층이하
B-3	•고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20	15층이하
				250	20층이하
B-4	•고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5	200	27층이하

주) B-1, B-2, B-3, B-4의 용도는 주택법을 적용하며, A-1, A-2, C-1, D-1, D-2, D-3, D-4, D-5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함

주) 1층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함

주) 1·2종 근린생활시설

주) A-2의 용도 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노인복지시설은 층별 제한 없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다, 라, 마 항목

가.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나.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바, 자, 타 항목

가. 일반음식점, 기원

라.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타. 노래연습장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단, 주택연면적이 8/10이하로 타용도 복합시 가능)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시설 중 발전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1층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업, 자동차 영업소 등)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시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350	5층이하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0	100	5층이하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층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과 그 부속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0	200	4층이하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지정용도: 관리소 - 2층지정용도: 노인여가복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에 의 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80%이상이어야 함 - 1, 2층 권장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용도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운동장, 오피스텔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0	350	5층이하

주) B-1, B-2, B-3, B-4의 용도는 주택법을 적용하며, A-1, A-2, C-1, D-1, D-2, D-3, D-4, D-5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함

■ 변경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A-1	•단독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60	150	3층이하
A-2	•단독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노인복지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정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지하층 주거용도	60	200	5층이하
B-1	•연립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0	200	4층이하
B-2	•중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90	10층이하
B-3	•고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20	15층이하
				250	20층이하
B-4	•고층APT 및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5	200	27층이하

주) B-1, B-2, B-3, B-4의 용도는 주택법을 적용하며, A-1, A-2, C-1, D-1, D-2, D-3, D-4, D-5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함

주) 1층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함

주) 1·2종 근린생활시설

주) A-2의 용도 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노인복지시설은 층별 제한 없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다, 라, 마 항목

가.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나.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바, 자, 타 항목

가. 일반음식점, 기원

라.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타. 노래연습장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단, 주택연면적이 8/10 이하로 타용도 복합시 가능)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시설 중 발전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1층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업, 자동차 영업소 등)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폐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사업 등 ※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350	5층이하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0	100	5층이하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과 그 부속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0	200	4층이하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 운동시설(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70(30(1))	150 350(30(1))	3층이하, 5층이하 (30(1))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 1층지정용도: 관리소 - 2층지정용도: 노인여가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예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80%이상이어야 함 -1, 2층 권장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외의 용도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운동장, 오피스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70	350	5층이하

주) B-1, B-2, B-3, B-4의 용도는 주택법을 적용하며, A-1, A-2, C-1, D-1, D-2, D-3, D-4, D-5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적용함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2 신설에 따른 허용용도 등 변경 -30(1)에 운동시설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신설 및 주차장1(30(1))과 중복결정에 따라, 운동시설을 허용용도에 추가 •중복결정 시설 규모에 맞게 밀도 조정

[별표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단독주택용지	A-1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물탱크를 FRP조로 설치할 경우 조적 등으로 구획하여 보이지 않게 할 것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사항)
공동주택용지	B-1 B-2 B-3 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ㄴ”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옥상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녹화 및 주민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수목 등 조경시설 설치(권장사항)
상업용지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전면의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마감 높이와 도로마감높이와의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제고
공공청사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체육시설	D-3	
사회복지시설	D-4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용도층의 외벽은 차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밀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변 가로망과 일관된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하여 건축물 입지로 인한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별표 3]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배치
단독주택용지	A-1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단, 기존건축물이 있는 블록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 거리 적용할 수 있음)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1m), 20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2m)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가각에 접한 대지내에서는 모든 도로에서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공동주택용지	B-1 B-2 B-3 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단, 기존건축물이 있는 블록의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 거리 적용할 수 있음) •광로변 교통소음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직각 배치 권장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1m), 20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2m)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있는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중로이상 도로변에 교통소음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5m 이상 : 환경영향평가 수용) •B-3(51-1블럭)의 건설사업 계획 수립시 인접산지와 스카이라인이 고려된 단지계획 수립토록 권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시 조건부 동의 사항에 해당되는 C지역(39), D지역(34, 51)은 군부대 지정장소에 2개소대분(36동)의 전투진지를 구축방어력 보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부대 협의결과에 따른다
상업용지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이상도로변(건축한계선 : 2m)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각 필지경계선으로부터 벽면한계선을 2m 지정하여 건축물 배치
공공청사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건축한계선 : 2m)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에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

[별표 4] 건축물 색채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색채
단독주택용지	A-1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로 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단 강조색은 가능)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은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공동주택용지	B-1 B-2 B-3 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베이지, 연한연두, 연한노랑 등의 부담없고 친근한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상업용지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강조색은 가능)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공공청사	D-2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전면공지에는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용시설(주차시설 등)과 보행 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전면공지의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장식포장, 인접한 보도 및 보행전용공간과 유사한 높이 및 재질을 유지하고 고저차 없이 연결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안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공동주택용지	B-1 B-2 B-3 B-4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전면공지에는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용시설(주차시설 등)과 보행 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전면공지의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장식포장, 인접한 보도 및 보행전용공간과 유사한 높이 및 재질을 유지하고 고저차 없이 연결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단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상업용지	C-1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전면공지에는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용시설(주차시설 등)과 보행 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 •전면공지의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장식포장, 인접한 보도 및 보행전용공간과 유사한 높이 및 재질을 유지하고 고저차 없이 연결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안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기준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서구의 구화인 국화 등을 포함한 식재를 권장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 6]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 기정

용도	도면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1면이상 확보) • 중로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획지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며, 획지당 최소 3m이상 확보 • 대상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 설치 • 지하층에 가급적 주택용도를 건축하지 않도록하고 1층 주차 활용토록 권장함
공동주택용지	B-1 B-2 B-3 B-4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과의 상충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교차부의 30m 이내구간은 차량의 출입을 금지토록 함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의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아파트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유도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야간에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지형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권장
상업용지	C-1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주차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차통로 설치(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 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D-5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은 각각부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용도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용도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의 용도 부설주차장을 주차면면적의 6%이상 확보하여야 함

■ 변경

용도	도면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1면이상 확보) • 중로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획지 2개소당 1개소의 공동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며, 획지당 최소 3m이상 확보 • 대상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 설치 • 지하층에 가급적 주택용도를 건축하지 않도록하고 1층 주차 활용토록 권장함
공동주택용지	B-1 B-2 B-3 B-4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과의 상충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교차부의 30m 이내구간은 차량의 출입을 금지토록 함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아파트 경비실은 출입자의 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유도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야간에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지형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권장
상업용지	C-1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주차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차통로 설치(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 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해 방지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노외주차장 및 체육시설	D-3 D-5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은 가각부로부터 4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주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용도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용도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의 용도 부설주차장을 주차면면적의 6%이상 확보하여야 함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번호 추가 -D-5 → D-3, D-5 •차량출입구 조정 - 각각부 10m→4m이상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1(30(1), 블로동 789번지)에 체육시설2 신설 및 중복결정에 따른 도면번호 추가 •주차장기능 구분을 위해 차량출입구를 조정함

[별표 7]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표시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A-1 A-2 B-1 B-2 B-3 B-4 C-1	공공 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지간의 단차 및 경계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통로개설 유도 •공공보행통로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등 보행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구조물은 설치 금지 •공동주택용지 도로변의 공공보행통로는 전면인도 및 전면공지와 동일하게 조성하고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공원이 있는 경우 연계 조성을 권장 •공동주택용지내 보행동선은 대상지 전체의 동선체계와 연계되는 보행동선을 계획하며, 최소 폭원 이상의 보행동선을 유지하여 안전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함(폭 1.5m 이상)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제공되는 면적에 대해 조정면적으로 인정 •벽면한계선에 의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의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보행자 전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독특한 장식,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 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보차 혼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상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해 있는 획지에 차량진입을 위해 지정 •보행자전용도로와 일체형으로 조성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도로단지내 도로, 공원 및 녹지계획에서 보도, 접근로의 기울기, 재질과 마감등은 편의시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전체가 연결되도록 조성 •장애인, 노인의 사용빈도가 높은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단차는 1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별표 8]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가 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계
식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내의 미려한 가로경관을 위해 지역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및 도로용지 중 불용지 부분에 조경시설 설치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 •가로수의 식재간격 6~8m를 기준으로 함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보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것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연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 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간 판 및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에서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의 설치 가능한 건물의 1층 출입구 부근에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가로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적극 권장 •건물 상단부의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공공정보, 건물명 등 1개에 한하여 허용 •대상지 내의 건축물에는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의 목적 등이 인정되고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주변도로변에서 설비배관(도시가스)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함

구 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옥 외 광 고 물 계 획	표시 (설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밖으로 돌출금지 및 이동간판 사용금지 •옥상간판 부착금지, 돌출간판 부착금지 •가로형 간판은 건물정면 2층이하에 설치하되 1개의 업소에 1개의 간판만 허용 (곡각 지점에는 2개허용) •간판 재질 중 후렉스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로고 및 픽토그램에 한하여 허용) •가로형 간판의 경우 한 건물 내 같은 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단, 입체형, 조각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층간 벽면 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80cm 이하로 한다.) •창문이용광고물 및 세로형 간판부착금지 (다만,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건물정면의 주 출입구 기둥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개별지주이용 광고물 설치를 금하고, 1개 건물당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지주이용광고물 허용(종합사인보드) •현수막, 벽보부착은 일체금지 (다만, 지정 벽보판 게시대 설치만 허용)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네온 및 전광류 사용허용 •선전탑 아취 광고물은 사안에 따라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공연간판은 공연 등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되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건축물 정면에 1개소만 추가로 허용 •공공시설 이용광고는 허용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방향에 접하는 쪽으로 광고물 표시금지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의 색채중 적색류와 흑색류의 표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
	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관 리조례에 따름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소당 1개이하로 설치(곡각지점은 2개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 (단, 필지분할가능선이 있는 대지의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9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대지내 공지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1)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따름

주2)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25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담지로86번길 16-17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2.3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12-3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6-6	인천광역시 서구 당지로86번길 16-17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26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305번길 42 (당하동)	20171025	드림로 시작지점부터 약3,050m시점 윗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더 빌 하우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치

고시일 : 2019-12-30

번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가좌동 21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64 (왕길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62 (왕길동)	소유자 신청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차지점에서부터 약 4.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64 (왕길동)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55호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12호(2017. 5. 1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30호(2019. 12. 9.)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7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 기 정: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명 칭: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8. 2. 9. 시행) 전부 개정 사항 반영(정비사항 유형 통합)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1-11번지 일원
- 면 적: 64,600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 정: 2017년 ~ 2019년
- 변 경: 2017년 ~ 2020년
- 변경사유: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 공사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반영
※ 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9-230호(2019. 12. 9.)로 정비 구역 변경 지정 고시

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56호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13호(2017. 5. 1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14호(2017. 9. 4.),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31호(2019. 12. 9.)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7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 기 정: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명 칭: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8. 2. 9. 시행) 전부 개정 사항 반영(정비사항 유형 통합)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 면 적: 80,579.5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 정: 2017년 ~ 2019년
- 변 경: 2017년 ~ 2020년
- 변경사유: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 공사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반영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231호(2019. 12. 9.)로 정비 구역 변경 지정 고시

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시 제2019-2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97호(2018.7.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소로1-311호선, 사업명: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용지조서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20-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311호선)
- 명칭: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22
변경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25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0.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없음	마전동	312-1	도	45	45	임인*	인천 서구 마전동**				
2	변경없음	"	159-6	임	10	10	배양*	인천 서구 서달로**				
3	변경없음	"	159-4	임	379	379	총도김씨*	인천 서구 마전동**				
4	변경없음	"	159-5	도	937	937	김원*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광*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원*	고양군 중면 일산리 ****				
5	변경없음	"	727-4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6	변경없음	"	727-5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7	변경없음	"	290-19	도	3	3	공	인천광역시				
8	변경없음	"	416-40	구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변경없음	"	313-3	도	52	52	박성*	김포 검단면 불로리**				
10	변경없음	"	312-3	도	27	27	공	인천광역시				
11	변경없음	"	321-18	도	30	30	임종*	인천 서구 마전리**				
12	변경없음	"	321-3	도	82	82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 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기정	"	321-29	도	5	5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 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변경	"	321-29	도	11	11	문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종*	인천 강화 길상 온수리 ***-*				
							이종*	경기도 용인 기흥구 중동 ****				
							이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	"	720-16	임	353	353	김형*	인천 서구 검단로**	인천산림보합	남동구 남촌로 **	근저당권	
									인천산림보합	남동구 남촌로 **	지상권	
2	변경	"	720-13	도	54	54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변경	"	720-10	도	1	1	임병*	인천 서구 마전리				
4	기정	"	729-1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변경	"	729-1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5	변경없음	"	719-3	도	136	136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변경	"	720-12	도	13	13	공	인천광역시 서구				
7	변경	"	720-15	임	63	63	윤태*	부평구 부평동***				
8		"	720-14	임	10	10	윤태*	부평구 부평동***				
9	변경	"	720-11	대	9	9	윤태*	부평구 부평동***				
10	변경	"	713-13	도	923	923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변경	"	686-35	대	21	21	신묘*	인천 서구 대곡동**				
12	변경	"	686-36	대	14	14	유일*	인천 서구 대곡동**	검단농업협동조합	서구 검단로 497	근저당권	
13	변경	"	713-10	도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변경	"	709-9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변경	"	700-8	도	598	598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변경	"	719-15	잡	1	1	송하*	서울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근저당권	
17		"	719-14	잡	2	2	송하*	서울 금천구 독산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근저당권	
18	변경	"	718-4	도	75	75	공	인천광역시 서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검단로 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 없음	대곡동	719-2	창고	블록조	11.2㎡	창고	송하준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2	변경 없음	“	159-5	한전주	블로지 8628A 004	1주		한전 인천 지역 본부				
3	변경 없음	“	720-16	한전주	태정지 1G1	1주						보조
4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213	1주						
5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214	1주						
6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한전주	태정지 8628A 321	1주						
7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331	1주						
8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334	1주						
9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한전주	태정지 8628A 241	1주						
10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태정간 8M 우2	1주			KT			
11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태정간 8M 우3	1주						
12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채신주	F208R151 1-4	1주						
13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06-11 F-14-20	1주						
14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태정지3 8628A 331	1주		SK 텔레콤				
15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C5011 2801 -2850	1주		KT				
16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채신주	태정지 8628A 241	1주		SK 텔레콤				
17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CCTV	742	1주		인천 서구청				
18	변경 없음	대곡동	713-13	CCTV	-	1주		미상				
19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CCTV	743	1주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9-25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51호(2012.6.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명: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수도권매립지에 체육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내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수영·수구장)
- 명칭: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 분	규 모	
	당초	변경
부지면적	100,625㎡	100,625㎡
건축용지	5,077㎡	6,912㎡
녹지용지	61,466㎡	37,795㎡
기반시설용지	34,082㎡	55,918㎡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실시계획 인가일 ~ 2014. 05. 30.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관계인	
기정	서구 왕길동				100,625		환경부 서울시		공유수면 매립지
변경	서구 왕길동				100,625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공유수면 매립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21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연번	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1	도로	중1-68	석남동 223-179번지	L=2,004m B=20m	2021~ 2023	13,600		13,600.0	6,800.0	6,800.0	1단계	
2	도로	중1-70	가좌동 148-61번지	L=462m B=20m	2020~ 2022	9,370		9,370.0	4,685.0	4,685.0	1단계	
3	도로	중1-71	가좌동 173-81번지	L=410m B=20m	2021~ 2024	17,157		17,157.0	8,578.5	8,578.5	1단계	
4	도로	중1-115	마전동 685-30번지	L=362m B=20m	2021~ 2023	2,372		2,372.0	1,186.0	1,186.0	1단계	
5	도로	중1-126	오류동 847-4번지	L=615m B=20m	2020~ 2023	9,910		9,910.0	4,955.0	4,955.0	1단계	
6	도로	중1-140	오류동 395-161번지	L=676m B=20m	2021~ 2024	10,613		10,613.0	5,306.5	5,306.5	1단계	
7	도로	중2-85	원창동 4-7번지	L=493m B=15m	2020~ 2023	5,479		5,479.0	2,739.5	2,739.5	1단계	
8	도로	중2-116	원창동 382-110번지	L=281m B=15m	2021~ 2023	3,814		3,814.0	1,907.0	1,907.0	1단계	
9	도로	중2-117	원창동 382-12번지	L=1,238m B=15m	2021~ 2024	23,830		23,830.0	11,915.0	11,915.0	1단계	

연번	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10	도로	중2-126	오류동 434-9번지	L=723m B=15m	2021~ 2024	9,379		9,379.0	4,689.5	4,689.5	1단계	
11	도로	중2-160	오류동 505-2번지	L=808m B=15~20m	2021~ 2023	6,010		6,010.0	3,005.0	3,005.0	1단계	
12	도로	중2-225	대곡동 497번지	L=996m B=15m	2020~ 2022	13,067		13,067.0	6,533.5	6,533.5	1단계	
13	도로	중2-226	금곡동 533-1번지	L=1,306m B=15m	2020~ 2023	12,976		12,976.0	6,488.0	6,488.0	1단계	
14	도로	중2-240	왕길동 산95번지	L=590m B=15m	2021~ 2023	4,500		4,500.0	2,250.0	2,250.0	1단계	
15	도로	중3-72	검암동 319번지	L=765m B=12m	2021~ 2024	7,200		7,200.0	3,600.0	3,600.0	1단계	
16	도로	소1-5	원창동 63-4번지	L=266m B=10m	2021~ 2023	3,480		3,480.0	1,740.0	1,740.0	1단계	
17	도로	소1-6	원창동 4-16번지	L=294m B=10m	2020~ 2022	3,251		3,251.0	1,625.5	1,625.5	1단계	
18	도로	소1-8	원창동 산31-2번지	L=285m B=10m	2021~ 2023	3,297		3,297.0	1,648.5	1,648.5	1단계	
19	도로	소1-9	원창동 133-4번지	L=244m B=10m	2021~ 2023	3,845		3,845.0	1,922.5	1,922.5	1단계	
20	도로	소1-15	석남동 650-77번지	L=168m B=10m	2020~ 2022	3,494		3,494.0	1,747.0	1,747.0	1단계	
21	도로	소2-4	가좌동 4-14번지	L=276m B=8m	2021~ 2023	2,371		2,371.0	1,185.5	1,185.5	1단계	
22	도로	소2-6	석남동 111-14번지	L=111m B=8m	2021~ 2024	953		953.0	476.5	476.5	1단계	
23	도로	소2-8	석남동 111-1번지	L=144m B=8m	2021~ 2024	2,882		2,882.0	1,441.0	1,441.0	1단계	
24	도로	소2-30	석남동 201번지	L=804m B=8m	2020~ 2022	3,583		3,583.0	1,791.5	1,791.5	1단계	
25	도로	소2-b	석남동 산118-3번지	L=29m B=8m	2020~ 2021	293		293.0	146.5	146.5	1단계	
26	도로	소3-1	석남동 217-5번지	L=498m B=6m	2021~ 2023	4,607		4,607.0	2,303.5	2,303.5	1단계	
27	도로	소3-1	가좌동 30-43번지	L=283m B=6m	2021~ 2024	4,836		4,836.0	2,418.0	2,418.0	1단계	
28	도로	소3-2	석남동 222-47번지	L=328m B=6m	2021~ 2023	2,790		2,790.0	1,395.0	1,395.0	1단계	
29	도로	소3-28	백석동 86-18번지	L=72m B=6~8m	2022~ 2023	1,367		1,367.0	683.5	683.5	1단계	
30	도로	소3-504	왕길동 204-6번지	L=293m B=6~8m	2023~ 2025	2,474		2,474.0	1,237.0	1,237.0	2-1 단계	
31	도로	소3-506	마전동 47번지	L=62m B=6m	2025	399		399.0	199.5	199.5	2-2 단계	
32	도로	소3-508	마전동 49번지	L=37m B=6m	2025	270		270.0	135.0	135.0	2-2 단계	
33	도로	소3-3	시천2 취락지구	L=66m B=6m	2023	270		270.0	135.0	135.0	2-1 단계	
34	도로	소3-1	경서 취락지구	L=321m B=6m	2025	995		995.0	497.5	497.5	2-2 단계	
35	도로	소3-3	경서 취락지구	L=69m B=6m	2025	214		214.0	107.0	107.0	2-2 단계	
36	도로	소3-4	경서 취락지구	L=42m B=6m	2025	130		130.0	65.0	65.0	2-2 단계	

연번	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37	도로	소3-1	시천1지구	L=329m B=6m	2023~ 2024	1,453		1,453.0	726.5	726.5	2-1 단계	
38	도로	소3-2	시천1지구	L=232m B=6m	2023~ 2024	570		570.0	285.0	285.0	2-1 단계	
39	도로	소3-3	시천1지구	L=127m B=6m	2025	505		505.0	252.5	252.5	2-2 단계	
40	도로	소3-4	시천1지구	L=90m B=6m	2025	276		276.0	138.0	138.0	2-2 단계	
41	도로	소3-1	하동지구	L=352m B=6m	2025	1,042		1,042.0	521.0	521.0	2-2 단계	
42	도로	소3-2	하동지구	L=367m B=6m	2025	1,669		1,669.0	834.5	834.5	2-2 단계	
43	도로	소3-3	하동지구	L=205m B=6m	2025	1,327		1,327.0	663.5	663.5	2-2 단계	
44	도로	소3-4	하동지구	L=52m B=6m	2025	418		418.0	209.0	209.0	2-2 단계	
45	도로	소3-5	하동지구	L=23m B=6m	2025	206		206.0	103.0	103.0	2-2 단계	
46	도로	소3-7	하동지구	L=110m B=6m	2025	713		713.0	356.5	356.5	2-2 단계	
47	도로	소3-8	하동지구	L=139m B=6m	2025	1,016		1,016.0	508.0	508.0	2-2 단계	
48	도로	소3-9	하동지구	L=69m B=6m	2025	204		204.0	102.0	102.0	2-2 단계	
49	도로	소1-1	검단2취소지역	L=848m B=10m	2023	7,293		7,293.0	3,646.5	3,646.5	2-1 단계	
50	도로	소2-1	검단2취소지역	L=207m B=8m	2023	1,559		1,559.0	779.5	779.5	2-1 단계	
51	도로	중3-1	검단2취소지역	L=2,199m B=12m	2023	27,709		27,709.0	13,854.5	13,854.5	2-1 단계	
52	주차장	노외주차장	석남동 산118-3	A=4,613㎡	2022	7,600		1,500.0	750.0	750.0	1단계	
53	주차장	노외주차장	석남동 515-3	A=1,361㎡	2022	3,524		3,524.0	1,762.0	1,762.0	1단계	
54	공원	소공원	시천동 97-3번지	A=335㎡	2025	395		395.0		395.0	2-2 단계	
55	공원	소공원	검암동 454-7번지	A=300㎡	2025	357		357.0		357.0	2-2 단계	
56	공원	소공원	석남동 322-32번지	A=1,358㎡	2025	2,242		2,242.0		2,242.0	2-2 단계	
57	공공 시설	파출소	검암동 514-7번지	A=649.5㎡	2020	3,475	3,475				1단계	
58	공공 시설	파출소	연희동 740-7번지	A=300.5㎡	2020	1,564	1,564				1단계	
59	공공 시설	동사무소	석남동 488-8	A=1,734㎡	2020~ 2021	1,600		1,600.0		1,600.0	1단계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2121호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1호(2018.01.02)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 . 12.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급 신청내용

- 가. 해산조합 :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 나. 신청인 : 이○○(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
 - 신청금액 : 금47,453,924원(금사천칠백사십오만삼천구백이십사원)
 - 신청일자 : 2019.10.18.(금)

2. 지급계획

- 가. 지급금액 : 금47,453,924원(금사천칠백사십오만삼천구백이십사원)

구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신청금액(원)	216,104	26,432,336	20,805,484

- 나. 지급대상 : 이○○
- 다. 지급방법 : 서구에서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직접 지급
- 라. 지급(예정)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마. 공고기간 : 2019.12.30.~ 2020.01.13.

3.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서구청 도시재
생경관과(☎032-560-4594)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